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7월 11일(목)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부 무역정책과 권오정 과장(02-2110-4829), 김현철 사무관(5312)

산업부, 제2차 무투회의에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보고

-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중점 -

〈 하반기 수출확대방안 핵심 요지 〉

□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환율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환변동보험 수요가 급증***한데 대응하여,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5천억원 확대(총 3조원)**하여 **환리스크 해소**를 지원

*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조원) : ('12. 실적) 1.1 → ('13.6) 1.4 (전년동기대비 128%↑)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대응하여 소비재, 첨단소재·부품, 중서부개발 인프라 등 **중국의 3大 내수시장 본격 진출** 추진

□ **(다수·중복인증 해소)** 동일제품에 대한 **다수·중복인증**으로 인해 **기업의 금전·시간부담**이 큰 바, 금년에는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

* [기대효과] 인증비용 : 168만원 → 145만원(△15%), 취득기간 : 56일 → 50일(△16%) (전 부처 인증제도 중복시험 상호인정시 평균)

□ **(전자무역 요금 감면)** 7.1부터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건당 800~1400원) **면제범위를 확대**(월 3건→10건)하고, **내년 7월부터 기본료를 폐지**하여 3만4천여 무역업체가 부담하던 **연간 106억원 이용요금**을 경감

* (1단계) 2.1만개 중소무역업체 면제, 총 26.5억원 인하(연간)
* (2단계) 나머지 1.3만개업체 면제, 총 79.3억원 추가 인하(연간)

□ 정부는 **2013.7.11(목)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하였고,

○ 기획재정부(장관 : 현오석)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음

□ 금번 대책은 **무역면**에서 하반기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기회**를 찾는데 초점을 두었고,

○ **투자면**에서는 규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경직적 입지규제 개선**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산업부가 보고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하반기 무역여건과 대응방향

□ 하반기에는 미국 출구전략에 따라 **환율불안**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필요

2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방안

① **(환위험 대응 지원)** 환변동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인수규모를 5천억원 확대**(2.5조→3.0조)하고, 자동차 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보험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현행 3년)(K-Sure)

* 기타 **옵션형 환변동보험 지원범위 확대**(당초 농산물 → 수산물, 제조업 추가) 등

② **(對이란 무역제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非제재품목의 수출애로**가 없도록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현대상선 7.11, 한진해운 7.25)를 추진하고, 대체시장 설명회·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선 전환을 지원**

- 무역제재로 인한 對이란 수출감소로 **유동성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③ **(해외마케팅·정보제공 강화)** 수출부진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수출유관기관과 **해외 전문조사기관간 업무제휴**를 통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고급 해외시장 정보제공**(코트라, 무협)

* 전시회(전년비) : **기계** 62회 24%↑, **자동차** 6회 45%↑, **선박·철강** 16회 78%↑

3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방안

□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최근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중서부 개발 정책에 따라 **중서부 지역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자료) : UN Comtrade, 중국 해관

○ 이에 반해, 우리의 對中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재 수출비중은 하락하여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자료) : UN Comtrade, 중국 해관, 中 지역별 對中 수출비중은 중국 수입통계 분석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안정적인 **對中 수출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의 對中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어 **중국 3大 내수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키로 하였음**

① **(소비재 시장)** 유력 유통벤더 발굴 등 **현지 유통망 진입을 확대**하고,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 등을 통해 **소비재 시장진출** 교두보 구축을 추진함

* 중국 대형 유통매장내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운영('13년 시안, 칭다오, 베이징)

- 특히,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조사***, **구매사절단 초청**(9월) 및 **대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對中 농수산식품 수출을 역점 추진**

* 한농연 등 종합단체 대표단의 중국 현지조사를 통해 수출가능성 파악(8월)

② **(첨단소재·부품)** **中國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첨단소재·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新산업 기업간 기술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

* ('13.下) GP-China in Seoul 개최(10월), ('14.上) GP-China 개최('14.6월)
*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 글로벌기업의 소재·부품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요연계형 R&D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납품을 동시 진행

- 소재·부품 물류기반 강화를 위해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제(Milk Run*)**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양국 참여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

* 중국 완성차 업체가 현지 트레일러를 페리선을 통해 한국에 보내, 한국 납품업체를 순회하여 부품을 수거하는 방식('12.9월 일본 닛산 旣 시행)

③ **(중서부개발) 주요 省·市별 개발계획과 프로젝트 정보 전파,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10월)과 함께, 산업부와 중서부 개발사업 관련 省·市간 **협력채널 확대**를 추진

* 중국 新도시화 정책 및 진출사례 설명회(9월), 내륙도시화 프로젝트 시장진출 로드쇼(10월, 우한)

□ 또한, 우리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통관·인증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음(무협)

○ 특히, 지난 6월말 한-중 관세당국간 체결한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늘어나도록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관세청)

* AEO업체는 對중국 수출시 세관 검사율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등 **신속통관 혜택**

* 한·중 관세당국 합동 AEO MRA 활용 설명회 개최(8월, 10월) 및 MRA 홍보자료 제작·배포

5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발굴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추진계획도 보고되었음

① 부처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인증제도(109개)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인 바, 금년에는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

* LED등기구, 레일 등 111개 품목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정책홍보 병행

* 신기술 분야는 NET인증으로 통합, 안전·환경·품질 등 분야별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대('14)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07년부터 부과하던 현재 건당 800~1,400원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내년 7월까지 폐지**하여, **3만4천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을 절감**토록 지원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1단계 ('13.7.1)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면제범위 확대(3건→10건/월)	2.1만개 중소무역업체 면제, 총 26.5억원 인하(연간)
2단계 ('14.7.1)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부과 중지	나머지 1.3만개업체 면제, 총 79.3억원 추가 인하(연간)

③ 기타 자유무역지역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건별→일괄), 용역·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일원화** 등 수출애로 해소방안이 보고되었음

5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무투회의(5.1일)에서 보고된 「**수출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실적도 보고됨**

○ **11.1조원의 무역금융 재원조성 등**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확충재원 11.1조원중 **3.1조원을 실제 기업에 지원**

○ **FTA 콜센터 1380 개통**(6.24일)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 중임

* 콜센터 개통(6.24일) 후 12일간 총상담수는 623건(일평균 52.0건)으로 개통 전 동기대비 166.2%(389건↑) 증가(**7.9일, 인지도는 20.5%로 조사**)

□ 산업부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 전문무역상사 지원 등 **나머지 과제들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 기재부와 국토부가 보고한「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각각 <참고 2> ~ <참고 4>과 같음

[참고 1]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참고 2] 제3호 안건(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
[참고 3]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기재부)
[참고 4] 제2호 안건(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참고 5] 제1호 안건(제1차 무투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현철 사무관(☎ 02-2110-5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박재진 서기관(☎ 044-215-4511)

참고 1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일시 · 장소 ‘13.7.11.(목) 10:00~11:50, 청와대 영빈관

안 건
①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책 추진현황(기재부)
②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 제도 개선(기재부)
- 입지규제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국토부)
③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산업부)

참석자 약 180명

○ **(정부)** 부총리, 교육부·안행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기재부 1차관 · 산업부 1차관(토론진행), 문화부 1차관, 미래부·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식약처장, 관세청장, 특허청장 산림청장, 중기청장,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24명

○ **(지자체)** 인천시장, 안양시장 등 2명

○ **(유관기관)** 코트라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무보 사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인천·부산진해 경자구역청장, 농어촌공사 사장, 생산기술연구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시험원·에너지경제연구원·식품연구원 원장, 국토연구원 부원장,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등 16명

○ **(경제계)** 경제단체장, 수출·투자 기업 대표 등 39명

○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 여상규 의원 등 3명

회의진행 총 110분

○ 개회(3분) → 모두말씀(10분) → 안건보고(20분) → 토론(65분) → 마무리말씀(5분) → 폐회·격려(7분)

○ 토론세션(수출, 투자)별로 참석자가 발언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하여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trouble shooting)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

2013. 7.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상반기 무역현황 분석 ····· 1

Ⅱ. 하반기 수출여건 진단 ····· 4

Ⅲ. 수출확대 방안 ····· 7

1.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 8

2.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13

Ⅳ.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 20

Ⅴ. 실천계획 ····· 26

Ⅰ. 상반기 무역현황 분석

◇ 세계적인 교역 정체와 엔低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수입 감소**로 **대규모 무역흑자 시현**

□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한 **2,767억달러**, 수입은 2.6% 감소한 2,57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96억달러 흑자 기록**

* 수출증가율(%) : (1월) 10.9 → (2월) △8.6 → (3월) 0.0 → (4월) 0.2 → (5월) 3.2 → (6월) △0.9

< 최근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달러, % / 통관기준)

구 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수출 (증감율)	5,552 (19.0)	5,479 (△1.3)	2,767 (0.6)
수입 (증감율)	5,244 (23.3)	5,196 (△0.9)	2,571 (△2.6)
무역수지	308	283	196

□ **(지역별)** ASEAN·중국 등 **對신흥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對美 수출**도 무선통신기기 등의 선전으로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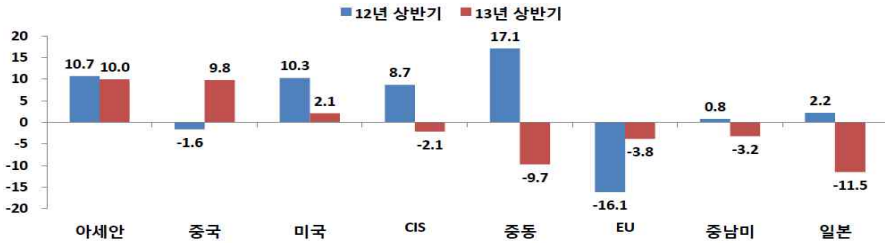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증가율(%) : (ASEAN) 10.0 (中) 9.8 (美) 2.1 (EU) △3.8 (日) △11.5

○ 반면, 엔저 등으로 인해 **對日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對EU 수출**도 부진**

* 對日 수출증가율(%) : (1월) 7.6 → (2월) △17.2 → (3월) △18.7 → (4월) △11.5 → (5월) △11.6 → (6월) △16.6

** 對EU 수출증가율(%) : (1월) 3.3 → (2월) △15.3 → (3월) △8.5 → (4월) 7.5 → (5월) △14.0 → (6월) 13.1

< 지역별 수출증가율 (%) >



□ **(품목별)** 스마트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에 힘입어 **무선통신기기·반도체·LCD 등 IT제품**의 수출이 **호조**인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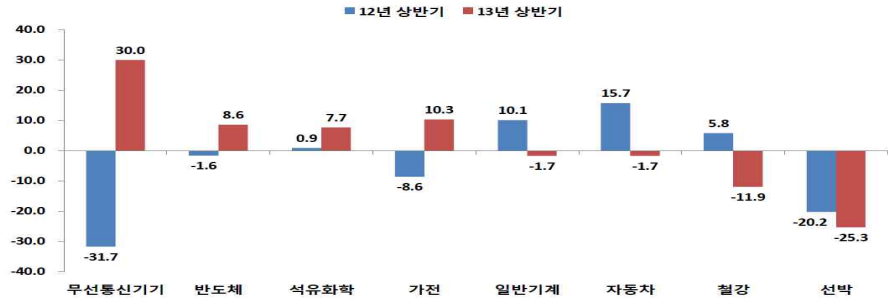
* 품목별 수출증가율(%) : (무선통신기기) 30.0 (반도체) 8.6 (석유화학) 7.7 (LCD) 1.3 (자동차) △1.7 (일반기계) △1.7 (석유제품) △2.1 (철강) △11.9 (선박) △25.3

○ 유가하락 등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선박 및 철강**의 수출도 **부진**

* 선박수출증가율(%) : (1월 △22.0 → (2월 △41.1 → (3월 △15.4 → (4월 △46.0 → (5월 △34.3 → (6월 11.8

** 철강수출증가율(%) : (1월 △7.5 → (2월 △12.9 → (3월 △11.4 → (4월 △14.0 → (5월 △12.3 → (6월 △13.2

< 품목별 수출증가율 (%) >



□ **(상반기 우리 무역의 특징)**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엔저 등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비교적 선전**

* 선박제외시 상반기 수출증가율 : 3.3%
* 일평균 수출증가율이 4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
(1월) 1.7 → (2월) 2.6 → (3월) 4.5 → (4월) △8.1 → (5월) 0.9 → (6월) 3.7

○ 또한, **원자재 가격안정**에 따른 **수입감소로 무역흑자 급증**

* ('12년 상반기) 109억달러 → ('13년 상반기) 196억달러, 80% 증가

○ 엔저 영향 가시화로 **대일 수출이 감소**(11.3% ↓)하고, 일본과 경합도가 큰 **일부 품목의 수출이 부진**

* 상반기 수출증가율(%) : (철강) △11.9 (석유제품) △2.1 (일반기계) △1.7

(참고) 품목별 수출 증감요인

품목	수출 증감요인
무선통신기기	○ 선진시장의 교체수요를 겨냥한 **전략 스마트폰 수출호조** 및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30.0% 증가 ○ 또한, 중국·베트남·브라질 등 **해외 현지공장의 가동률 확대**로 인해 휴대폰용 **부품 수출**도 증가
반도체	○ 스마트기기 수요증가로 인한 **D램 및 낸드 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증가 ○ 삼성전자의 갤럭시S4 등의 **부품공급이 본격화**되며, AP 등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증가
석유화학	○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물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LCD	○ **TV용 패널 출하량 증가, 대형 LCD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가전	○ **스마트TV·3DTV** 등 프리미엄 TV 판매호조 및 **선진국의 절전형 조명기기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3% 증가
일반기계	○ 원동기 및 펌프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국 재고물량 누적** 등으로 인해 수출이 **소폭 감소**
석유제품	○ 제품수출 **단가하락** 및 일부 **정유사의 설비보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수출이 2.1% 감소
자동차	○ 신차 본격수출 및 주요국 딜러망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 현대기아차 **노사협상 타결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철강	○ 철강시황 회복지연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對日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11.9%)**
선박	○ **선박공급 과잉, 유럽 재정위기 지속,** 선박금융 위축, 인도연기 등으로 인해 수출이 **대폭 감소(△25.3%)**

Ⅱ. 하반기 수출여건 진단

◇ **미국 출구전략,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엔화 불안**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반기 수출여건은 **순탄치 않을 전망**

1. 글로벌 시장 동향

□ **(미국)** 美 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 다만, **달러 강세, 美 경기 회복 가능성** 등은 對美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

□ **(중국) 실물경기 지표 불안*** 등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 대두

* 6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3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골드만 삭스는 '13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7.8%에서 7.4%로 하향 조정

○ 시진핑 정부는 **'中速'성장**이라는 새 경제운영 방향 하에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고 있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경색이 우려**

* 6.20 중국 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 7일물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일본)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국채금리 상승,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 증폭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요소 노출**

* 日 경제성장률(전기대비연율, %) : ('12.3Q) △3.5 → ('12.4Q) 1.0 → ('13.1Q) 3.5
* 닛케이 지수 : ('12말) 10,323 → ('13.5.22일) 15,627 → (6.13일) 12,445 → (7.5일) 14,310

□ **(EU)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및 신용경색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연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

* EURO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12.3Q) △0.1 → ('12.4Q) △0.6 → ('13.1Q) △0.2
* EURO 실업률(%) : ('12말) 11.8 → ('13.3월) 12.1 / 소매판매(전기대비 %) : ('13.1월) 0.9 → ('13.3월) △0.1

□ **(신흥국)** 美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인니, 브라질 등 경상수지 적자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침체가 우려**

2. 하반기 수출여건

□ **(긍정적 요인)**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움직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원/달러 환율추이 : ('13.1월) 1,065.4 → (3월) 1,102.2 → (5월) 1,110.7 → (6.28일) 1,149.7

○ 또한, **미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는 긍정적 요인

* 로이터 지수 : ('12.9월) 3,172 → ('13.1월) 2,997 → (3월) 2,947 → (5월) 2,828

○ 업종별로는 **선박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어 수출 견인 기대

* 인도예정 물량,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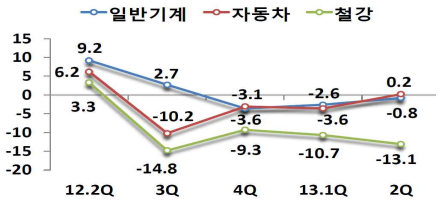
□ **(부정적 요인)** 中 성장률 둔화, 美 출구전략, EU 경기회복 지연, 엔화 불안, 이란제재 등은 우리나라 수출의 위협 요인

○ **(중국·신흥국 경기둔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 美 출구전략으로 인한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수요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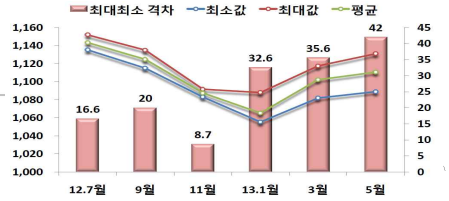
○ **(환율 불안)**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원화환율의 급변동, 엔화환율 변동성 확대** 등 환율 불안정성 증가

* 엔/달러 환율 : ('12.6월) 79.3 → ('13.5.23일) 103.2 → (6.28일) 98.5 ('12.6월 대비 24.2% ↑)
원/100엔 환율 : ('12.6월) 1,469.1 → ('13.5.23일) 1,078.1 → (6.28일) 1,167.2 ('12.6월 대비 20.6% ↓)

< 주요 對日 경합품목 수출증가율(%) >



< 원/달러 환율변화 및 변동폭(원) >



○ **(이란제재 강화)** 국방수권법 발효(7.1일)에 따른 이란제재 강화로 **對이란 수출('12년 63억달러) 감소** 우려

* 에너지·조선분야 등 관련 제재로 '13년 對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10억달러 이상 감소할 전망

[참고]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

□ **(미국경제)** 출구전략이 최근 미국 실물경제 회복세에 대한 낙관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기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

○ **(실물) 민간소비**는 시퀘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경기 반등**에 따라 **설비투자도 개선**될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미시건大): ('13.1월)73.8 (2)77.6 (3)78.6 (4)76.4 (5)84.5
* 신규주택판매(전월비, %): ('13.1월)15.7 (2)△6.3 (3)3.5 (4)2.3

○ **(금융)** 美 **국채금리**는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상승**하였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 시현**

* 미국(10년물, %): ('12말) 1.69→ (5.31) 2.16 → (6.20) 2.41 → (7.5) 2.73

□ **(글로벌경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은 **신흥국 환율상승** 및 **신용경색을 초래**할 우려

○ **(중국)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으나, **자산버블 심화 우려**로 지속적 금리 인하가 어려워 **경기둔화 가능성**

*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 : (5.20) 2.96 → (6.20) 13.44 → (7.9) 3.24

○ **(신흥국)**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본유출**, 환율변동 압력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경제회복 지연 우려**

□ **(한국경제)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이나, **중국·신흥국이 받은 충격**은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환율)** 원화 환율 상승과 더불어 엔저 완화는 수출에 긍정적 영향

○ **(시장)** 반면,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중국과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 예상

Ⅲ. 수출확대 방안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내수 확대 기회를 활용토록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 추진**

◈ **시장여건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

① 환율 급변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② 이란 수출기업의 **수출선 전환, 유동성 공급** 등 피해 최소화 지원

③ 일본내수 회복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강화, 일본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등 **엔저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④ 신흥시장·수출부진품목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해외시장정보 제공체계**를 전면 개편

◈ 중간재 위주 對中수출로 인한 **경기변동 취약성을 해소**하고, 중국의 내수확대 기회를 활용토록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

① **소비재 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유통망 공략, 물류기반 조성** 및 농수산물·식품 등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활동**을 강화

② 중국 선도기업에 대한 **소재·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확대 및 양국간 **기술교역 기반** 구축

③ **중서부개발 시장진출**을 위해 **정보제공, 지방정부와 협력채널 구축** 및 중국 **4대 권역별 맞춤형 진출 지원**

④ **중국 시장진출 장벽**을 낮추고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통상협력** 강화 및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1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 **(현황)** 미 출구전략으로 인한 환율급변, 신흥시장 위축 등 **하반기 수출여건 악화**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가 급증

○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환위험 노출**을 가장 큰 경영애로로 호소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

*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상황(무역협회, 2월)
- 환위험 관리비율 : 수출 1천만~2천만불(58%), 5백만~1천만불(53%), 5백만불 미만(27%)

○ 중국 등 신흥시장의 **시장위축 우려**, 엔저로 인한 **일본기업과의 가격경쟁*** 등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

* (미국) '13.1~4월 **자동차** 판매량 한국 2.3% 감소 vs. 일본 5.3% 증가
* (필리핀) Komatsu는 **중장비** 가격 30~50% 인하, (태국) 일본산 **기계** 가격 30% 이상 하락

○ 또한, 최근 **이란 수출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요청

□ **(추진전략)**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해외마케팅 등 집중 지원**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력 제고

② 이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③ 엔저에 대응한 對일본 마케팅·투자유치 강화

④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및 해외시장정보 지원체계 보강

1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력 제고

◇ 우리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 대응력 제고를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추진

□ **(환변동보험 인수확대)** 환변동보험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당초 대비 **0.5조원 상향한 3조원으로 인수한도 확대**

*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조원) : ('12.6) 0.6 → ('13.6) 1.4 (전년동기대비 128%↑)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조원) : ('12) 1.1 → ('13.5월 목표) 2.5 → (조정) 3.0

○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확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인수한도의 1.3배 범위내에서 회전한도 운영*** 허용

* 환변동보험을 회전한도로 운영시 인수한도가 30% 확대되는 효과 발생

□ **(보험기간 확대) 자동차부품 등 해외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환위험 헷지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7월)

* 상품수출용 환변동보험의 보험기간 확대 : (현행) 최대 3년 → (개선) 최대 5년

□ **(보험료 부담경감)** 환변동보험의 **보험료 특별할인(20%)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지원범위****를 확대**

*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기간 : (당초) '13.6월 → (변경) '13.12월
** 지원범위 : 농산물 → 수산물 + 제조업 추가,
수산무역협회 및 무역협회 회원사 대상 수출초보 중소업체 지원(7월)

□ **(외환거래 서비스강화)** 수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통화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선물환거래 서비스 한도 증액****(수은)

* 통화전환옵션부대출 전환 횟수 확대(1월) : 1회 → 2회(대출건당)
** 선물환거래 서비스 한도 확대(2월) : U$20백만 → U$50백만

□ **(인식 제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교육 강화 및 지역설명회 지속 개최**

* 中企중앙회와 공동으로 中企 환리스크 관리교육(6.18일 부산, 6.25일 서울)
中企 환리스크 관리설명회(7.5일 시화, 7.18일 서울, 8.13일 광주) 등

2 이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 교역가능 품목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제재품목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및 유동성 지원 등 피해 최소화 지원**

□ **(수출애로 해소)** 비제재 품목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수출활동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對이란 **교역 관련 장애요소* 제거**

* 최근 글로벌 해운사의 對이란 운송서비스 중단으로 수출 지연 또는 일시 중단 상태

○ 구체화된 제재사항 및 **교역가능한 분야를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시행**(7.1, 무협)하고, 관련 **동향 지속 안내**

* 對이란 수출기업 설명회(6.13 서울/6.26 부산, 총 700여명, 7월 중 추가 개최)

○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방안*** 마련 및 제재품목 **수출 중소기업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1:1 집중 관리**(중기청)

* 국적선사 對이란 운송서비스 재개 : (현대상선) 7.11일, (한진해운) 7.25일

□ **(피해기업 지원)** 제재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선 전환 및**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 **대체시장 설명회**(7월, 서울),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UAE, 터키 등 4개국), 駐韓대사·상무관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코트라, 무협 등)

○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수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 수출신용보증 재보증시 전액 기간연장(무보), 수출금융 한도확대 및 만기연장(수은)
* 대출금리 우대 : (산은) 최대 0.3%p, (기은) 1.0%p, (수은) 0.5%p
* 특례보증·특별온렌딩(신기보/정금공) : 기업당 100억원 한도

3 엔저에 대응한 對일본 마케팅·투자유치 강화

◇ **일본 경제회복**을 활용한 **소재부품, 농수산식품 수출**노력 강화 및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내수공략) 일본 경제회복**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대상 소재·부품 마케팅, 농수산식품 마케팅** 지원 및 **물류기반** 강화

○ 일본기업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Japan Sourcing Desk' 운영**, **대형 수출상담회*** 개최 및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설치·운영

* 한국부품산업전 개최(9월, 도쿄): 한국 80개사, 일본 300개사 참여 예정
** 엔지니어링, A/S 즉시대응 등 서비스 제공하고 일본기업 대상 협상 지원(나고야, 5월)

○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 국제구매담당자**(IPO : International Purchasing Office)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수요발굴 및 거래선 관리 지원**

* KJ IPO 클럽 : 월정기모임 → 수요발굴 → 업체발굴 → 핀포인트상담 → 납품추진

○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농수산식품** 등은 안전성 홍보를 중심으로 **유통망 공략을 강화**하고,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

* (소비재) 일본기업 구매상담회('13.下, 3회), (수산물) 옵션형 환변동보험 지원(7월)

○ 기존 화물선에 한정된 물류운송을 **여객선(Ferry) 활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송시간 및 물류비 절감** 추진

* 민간해운업체(Pan star) 협조로 일본으로의 물류운송 시범실시 추진('13.하)
* 여객선 이용시 항공운송보다 85% 비용절감, 화물선 운송보다 5일 단축 효과

□ **(투자유치)** 일본기업의 해외생산네트워크 강화에 대비한 **투자유치 강화**

○ **타겟 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등) 발굴에 주력하고 旣투자기업에 대한 **증액 투자 유도**

○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IR 활동을 강화**하고, 일본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위한 외투지역 지정

*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1월)

4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및 해외시장정보 지원체계 보강

◇ **중국·신흥시장, 수출부진품목**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집중하고, 높아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해외진출 정보의 고급화** 추진

□ **(마케팅)** 수출효과가 높은 **중국 및 신흥시장,** 거래선 확대가 필요한 **수출부진 품목**을 타겟으로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 **중국·신흥시장**에 대한 **사절단·전시회 파견을 확대***하고, 기계·자동차·선박 등 **수출부진 품목**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집중 지원

* 사절단·전시회(전년비) : **중국** 157회 12%↑, **아시아** 174회 24%↑, **CIS** 23회 35%↑
** 전시회(전년비) : **기계** 62회 24%↑, **자동차** 6회 45%↑, **선박·철강** 16회 78%↑

○ **무역관***, **공동물류네트워크****등 해외 수출인프라 확충 및 **기업활동 지원협의회**(全 공관) 본격 운영을 통해 **해외 수출현장 지원**

* 하반기 개설 무역관 : 몽골, 모잠비크, 벨라루스 ('13년말 누계 122개 예정)
** 공동물류네트워크 4개소 추가 설치 : ('13.上) 36개소 → ('13.下) 40개소(누계)

☞ 필요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 하반기 마케팅 확대(KOTRA)

□ **(해외정보) 무료정보**는 편리한 이용을 위해 **포털·모바일化**하고, **유료정보**는 기업의 눈높이를 충족하도록 **고급정보 제공 강화**

○ 유관기관 무료정보의 집중 이용을 위한 **해외시장정보 검색포탈*** 구축 및 실시간 핵심 시장정보 제공의 **모바일 App 개발·배포**('14.上)

*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수출 관련 정보를 DB化하고, 순차적으로 개방·공유 강화

○ **시장조사 서비스***(KOTRA) 품질제고를 위해 **해외 전문조사기관의 유료정보를 구매**('14년 200건 내외)하여 조사보고서의 품질을 강화

* 수요동향, 관세율, 경쟁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이 **해외 전문조사기관의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유관기관**이 해외 전문조사기관과 업무제휴 강화(KOTRA, 무협)

2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 **(현황)** 중산층 증가, 도시화 등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재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아직까지 **초기단계**

○ 우리의 **對中수출** 중 중국의 해외수출을 위한 **가공수출 및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재 수출비중이 미미**하여 **중국 경기 변동에의 취약성 내포**

* 對中 가공수출 비중('12년, %) : (대만) 51.8, (한국) 49.7, (일본) 35.4, (미국) 14.9
* 對中 가공단계별 수출비중('12년, %) : (중간재) 72.4, (자본재) 23.7, (소비재) 3.2, (1차산품) 0.6

○ 또한,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수출**은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발전전략을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은 초기 단계**

* 중서부 지역은 중국 전체수입의 10.4%('12년), GDP의 27%('11년)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중서부지역에 전체 대중수출의 3.3%만 수출

○ **높은 관세율**, 통관시 **시험·인증 등 비관세장벽** 및 **전문적인 중국진출 서비스 부족**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추진전략)** 글로벌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고,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 활용을 위해 **선제적 내수시장 진출**

○ 내수 **소비재,** 중국 글로벌기업 대상 **소재·부품,** 중서부개발 **인프라**를 **타겟 내수시장**으로 **선제적 시장개척 활동** 추진

○ 양국 정부간 **통상협력을 확대, 시험인증, 통관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추진**

①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② 중국 글로벌기업에 대한 소재·부품 공급 확대
③ 중서부개발 참여 및 권역별 차별화된 진출 노력
④ 중국 시장진출 장벽 완화

(참고) 중국의 교역구조 및 우리 對中 수출구조

□ **중국 수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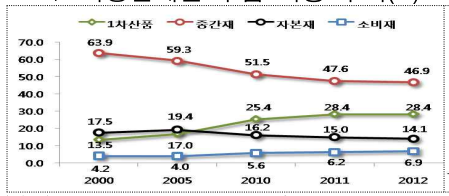
○ **(가공단계별)** 반제품, 부품 등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비중은 하락한 반면, **1차 산품·소비재의 수입비중은 상승**

- 특히, 중국의 전체 수입 중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지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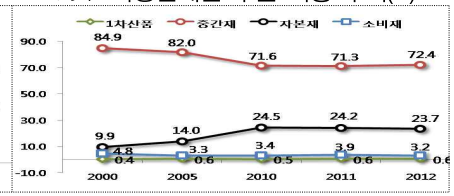
* 中 가공수입 비중(%) : ('00) 41.1 → ('05) 41.5 → ('10) 30.0 → ('11) 27.0 → ('12) 26.5

○ **(지역별)** 최근에는 화동지역의 수입비중이 하락하고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서부 내륙지방의 수입비중 상승**

< 中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추이(%)>



< 對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UN Comtrade, 중국 해관

□ **우리나라 對中 수출구조**

○ **(가공단계별)** 중간재 수출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출비중**은 오히려 **하락** 추세

-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 **가공수출 비중 높음**

* 對中 가공수출 비중('12년, %) : (대만) 51.8 (한국) 49.7 (일본) 35.4 (미국) 14.9

○ **(지역별) 중서부 지역 수출**비중 상승 추세이나 **미미**한 수준

* 지역별 對中 수출비중 추이('12, %) : (화동) 74.4 (화북) 16.0 (동북) 6.4 (중서부) 3.3

□ **시사점**

① **화장품, 유아용품(분유 등), 유통·프랜차이즈, 가공식품, 문화콘텐츠 등** 최근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수용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② 중국 수입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입시장을 **대형 LCD, 시스템반도체, 고급 자동차부품 등 핵심 부품소재**로 적극 공략

③ **중서부 내륙지방 '新도시화'**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건설·플랜트, 기계설비류 등** 수혜품목 수출 확대

1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현지 **유통망 공략,** 농수산식품 등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활동 강화**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 **(유통망 확보)** 내수 소비시장 직접 공략을 위한 **현지 유통망 강화**

○ 한국제품을 고정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유통망과 장기 협력체계*** 구축 및 **유력 유통벤더 발굴**** 확대(KOTRA, '13년 200개사)

* 한·중 유통산업협력서밋(8월) : 중국 省·市별 유력 유통 CEO 100여명 방한

**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내 한국관 운영 : 징동상청(1위), 아마존(3위)
내륙시장은 중국 홈쇼핑 연계 마케팅 : (우한) 우한광통, (창사) 해피고우

○ 중국 **대형 유통매장에 「中企제품 전용매장(K-HIT)」을 설치**하여 **대형매장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4분기)

* '13년 3개 설치(시안卜蜂蓮花超市(LOTUS), 칭다오 家事客(JUSCO) 및 베이징 롯데마트)

○ 2·3선도시 민관합동 **유통시장 조사단** 파견(7월), **중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발간(9월) 등 정보제공 확대

□ **(농수산식품) 안전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선제적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마케팅 강화**

○ 중국 현장 및 소비행태, 우리 농수산식품 진출 현황 등 **현지 점검**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가능성 확인 추진**

* 한농연 등 종합단체 대표단 중국 현지 조사 추진(8월)

○ 중국 대형마트 **농수산식품 구매사절단 초청**(9월), 유력 바이어 초청 **대형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하반기 1~2회) 및 **수산박람회** 집중 참가

* 중국 국제 어업박람회(11월), 홍콩 식품축제 판촉전(12월) 등 하반기 7회 참가

○ 수출 농산물 공동브랜드 'Whimori(휘모리)'에 대한 **중국 유통망 홍보 강화** 및 對중국 인기품목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

* 현재 김치,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새송이버섯 등 채소류, 과일류 등 11개 품목

○ 低溫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 남부**(홍콩) 확대, 低溫 물류·마케팅 기능 수행의 **'해외 수출전진기지'*** **구축**('14년)

* 칭다오 류팅공항지구 소재 물류시설(냉장·냉동 3,203㎡, 정온 4,050㎡)

□ **(물류기반 조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핵심 기반인 **물류시스템 구축**

○ 중소 수출기업이 **일관 물류서비스**(창고-통관-운송-결재-A/S)를 저렴하게 이용토록 **공동물류네트워크 확대** 추진 ('13년 9개 → '14년 12개)

○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對중국 물류거점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13.下, 산업부·국토부·해수부 협업)

* 중국 내 물류기반 구축, 국내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거점 구축 및 화물 항공·해운물류 확대 등 중장기 물류기반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

2 중국 글로벌기업에 대한 소재·부품 공급 확대

◇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확대, **중간재 시장진출**을 위한 전시회·사절단 집중 파견 및 한·중 양국간 **기술교역 활성화**

□ **(글로벌 파트너링) 중국 글로벌기업**과 한국 기술형 중소기업간 **첨단 소재·부품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확대**

○ GP-China(6.28) 참가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핀포인트 상담회 개최** ('13.下) 및 중국 글로벌 기업 대상의 **대규모 GP 상담회 확대***

* GP-China in Seoul 개최(10월), GP-Korea에 중국기업 초청 확대(11월), GP-China개최('14.6월)

○ 중국 글로벌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공급망 국내 조성으로** 對중국 공동 진출 추진

* 홍콩·싱가포르 PE·VC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11월)

○ 중국 완성차업체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제*(밀크런, Milk Run) 구축**을 위해 **양국 참여기업 발굴 및 홍보 강화****

* 중국 완성차 업체가 현지 트레일러를 페리선을 통해 한국에 보내, 한국 납품업체를 순회하여 부품을 수거하는 방식('12.9월 일본 닛산 旣 시행)

** 글로벌 파트너링(GP), 핀포인트 상담회 등을 통해 중국 완성차업체에 대한 한국 자동차부품업체 납품계약 확대(밀크런을 통한 물류비 절감, 생산성 증가효과 홍보)

○ **프리미엄 소재부품 온라인 사이트*** **운영, 中 글로벌기업 Value Chain맵** 작성, 고성장 중국기업 **디렉토리 구축** 등 상시 정보제공 강화

* 한·중 IT 게이트웨이 內 프리미엄 부품기업 웹사이트 구축(www.kosinoit.org)

□ **(신산업협력)** 韓(시장진출) 中(기술이전) 양국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신산업 기업간 기술교류 확대**로 개발단계부터 공동산업화 추진

○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협력 MOU'상 **공동 R&D 희망사업** (각 50개)중 **3개 사업**을 우선 추진('12월, 10억원)

○ 기술이전 및 M&A 상담회, 공동R&D 프로젝트회, 기술IR 등을 통해 기업·연구소가 개발한 **유휴 실용기술 진출 확대**

* 한·중 테크노마트(9월, 서울), 한국 특허기술 對중국 이전 설명회·상담회 (9월, 칭다오·광저우), 광둥성 저탄소 포럼(9월), 한·산시성 하이테크 파트너십(10월)

3 중서부개발 참여 및 권역별 차별화된 진출 노력

◇ 중서부 지역별 개발사업 조사, 지방정부 협력채널 등 **중서부개발 진출기반 구축** 및 **지역특성별 맞춤형 진출 추진**

□ **(중서부개발)** 지방정부별 개발계획 및 중점 프로젝트 **정보** 전파, 현지 **투자환경** 조사, **현지기업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서부 주요 성·시별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전파(9월)

* 중국 신도시화 정책 및 진출사례 설명회(9월, 창원)

○ 현지 진출여건 파악을 위해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10월)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내륙도시화 프로젝트 시장 진출 로드쇼(10월, 우한)
청뚜 서부 국제 전시회(10월, 청뚜)

○ 산업부가 광둥성('09년)·산시성('12년)과 체결한 경제협력 MOU를 중심으로 **중서부 개발사업 진출 관련 성·시로 협력채널 확대**

* 예시 : ('14년) 쓰촨성 → ('15년) 후베이성 → ('16년) 깐수성

□ **(권역별 진출) 중국 4대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도출하여 **맞춤형 시장 진출 지원**

○ **(화북) 서비스, 조선, 가공식품 등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 베이징 서비스교역회(6월), 칭다오 신선식품 당일 통관 서비스 제공(칭다오 물류센터)

○ **(화동)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링 거점**으로 활용

* 공장설비 업그레이드쇼(상하이, 9월), 코리아오토파트플라자(항저우, 11월)

○ **(화남)** IT, 환경 등 **신흥산업 중점 진출 지역**으로 타겟팅

* 스마트 에코 프로젝트플라자(광저우, 9월), IT intelligence사업(선전, 11월)

○ **(중서부)** 新도시화의 직접 수혜지역으로 **스마트시티,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등 수요확대에 따른 진출 추진

* 서부경제협력플라자(청뚜, 10월), 새마을운동협력사업(정저우, 10월)

< 중국 4대 권역별 특성 및 중점 산업현황 >

지역	주요도시	특성	중점 산업
화북	베이징	IT, 문화 중심도시	IT, 서비스, 문화콘텐츠, 고급소비재
	다롄	중국 선박제조기지	선박기자재, 부품, SW
	칭다오	임가공 전초기지	원부자재, 유기농, 전자, 고급소비재
화동	상하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자동차, 금융·서비스업, 콘텐츠
	난징	중부 전자 제조허브	태양광, LED, 전자부품, 중장비
	항저우	고급 소비도시	소비재, 애니매이션, 광전자
화남	광저우	화남경제 중심지	IT, 전자제품, 의류, 환경
	선전	IT 생산기지, 물류거점	전기 및 전자제품, 부품소재
중서부 내륙	정저우	중부 굴기 중심	농기계, 식품, 의류, 의료
	우한	중부 내륙 물류 중심	에너지절감, 엔지니어링, 유통, 건자재
	청두	서부최대 소비유통 거점	의류, 화장품, IT, 환경
	시안	중서부 신산업 메카	IT, 항공·우주, 에너지, 기계장비

4 중국 시장진출 장벽 완화

◇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통관편의를 강화

□ **(비관세장벽 극복지원)** 정부간 **통상협력, 표준·인증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 **(통상협력)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장관), **국장급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반덤핑, 투자애로 등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애로해소 강화**

* '경제통상협력 MOU'(6.28),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활용(韓산업부-中상무부)

○ **(시험인증)** 對중국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를 위해 한·중 FTA 등**을 통해 **과도한 인증을 완화하고 상호협력 추진**

* 중국 강제인증제도(CCC)의 인증소요기간 단축, 성적서 상호수용 등을 검토·추진

○ **(현지컨설팅)** 국내 중소기업의 **통관·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무역협회)

□ **(통관편의 제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 지원** 및 對중국 수출기업 대상 **홍보 강화**(관세청)

* 對중 수출업체 3만여개중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업체는 101개**(중소기업 22개)**
* AEO업체는 對중국 수출시 세관 검사율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등 **신속통관 혜택**

○ **(수출기업 지원) AEO 공인기준·절차 합리화*** 및 지원대상 확대**

* 관련 규정(고시, 가이드라인 등) 개정 및 공인심사절차 개선
* 지원대상업체(개) : ('13) 23 → ('14) 27

○ **(홍보강화)** 對중국 수출기업 대상 **한·중 관세당국 합동 AEO MRA 활용 설명회 개최***(8월, 10월) **및 MRA 홍보자료** 제작·배포

* **한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중국**(베이징,상하이,광저우,칭다오,난징 등) 교차 개최

Ⅳ.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1. 다수·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상호인정 및 유사인증제도 통합

◈ **(애로)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품별로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인식

* 부처별로 안전·품질·환경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109개의 법정의무·임의 인증제도 운영 중(산업부 27, 국토부 18, 환경부 9, 농림부 8, 미래부 8 등)

○ 동일제품에 **다수·중복인증**으로 인한 **인증비용·소요기간 과다**

* 중소기업 평균 인증 보유수 : 14.9개, 취득·유지 비용 : 3,230만원 (상공회의소, '10)
* '인증마크 사실상 준조세, 작년 5조 9천억원에 달해' (한국경제,'13.1월)

◈ **(관계부처)**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미래부, 식약처 등 **23개부처**

□ **(해소방안)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에 대한 **상호인정** 및 **유사 인증제도간 통합** 추진 중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안 논의(('13.5) 19개부처·인증기관 175명 참석→('13.11) 하반기 포럼 실시)

○ **(상호인정)** 환경부 등 **5개부처 9개인증간** 중복시험항목 시험성적서 **상호인정**('13.12)

* LED등기구, 레일 등 111개 품목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정책홍보 병행

○ **(제도통합)** 우선 **신기술 분야** 인증제도*를 **NET인증으로 통합**하고 안전·환경·품질 등 **분야별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대**('14)

* 전력신기술·자연재해저감신기술·교통신기술은 인증의 목적·심사절차가 NET인증과 유사

○ **(근본적 해결)** 인증제도의 **사전 중복방지**를 위해 법정인증 신설·확대시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인증일몰제 운영, 국가단일인정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14)

□ **(기대효과)** 부처간 인증중복으로 초래되는 **기업의 부담 해소**

*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완료시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15%), 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16%) 경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

2. 중소무역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무역 요금체계 개편

◈ **(배경)**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은 '07년부터 전자무역기반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유지보수비에 충당**(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최근 글로벌 저성장 지속,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이용요금*** **부담완화 추진**

* 전자무역 이용요금체계 :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 서비스별 최소요금 + 전송료

◈ **(관계부처)** 산업부

☐ **(추진방안)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단계적 폐지** 등 **요금체계 개편**

* 현재는 수출입 건수에 따라 800~1,400원/건 부과(월 3건이하 면제)

○ **(1단계, '13.7.1)** :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면제범위 확대(3건→10건/월)

○ **(2단계, '14.7.1)** :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부과 중지

< 단계별 시행방안 >

	현재('12년기준)	**1단계**('13.7.1)	**2단계**('14.7.1)
면제범위(월별)	3건 이하	10건 이하	전면 폐지
부담업체(월평균)	3.4만개	1.3만개	-
연간 부과액	106억원	79억원	-

* 1단계 시행으로 2.1만개 무역업체에 대한 부과 면제(약 27억원)

○ **향후** KTNET은 무역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송료 현실화, 경영합리화 추진 등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 **(기대효과) 약 3.4만개** 무역업체가 부담해오던 **연간 약 106억원**의 전자무역 이용요금 **부담 경감**

* (1단계) 2.1만개 중소무역업체 면제, 총 26.5억원 인하(연간)
* (2단계) 나머지 1.3만개업체 면제, 총 79.3억원 추가 인하(연간)

3. 자유무역지역(FTZ)내 관세행정 제도개선

◈ **(애로) FTZ**에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통합물류센터 설치 수요**가 있으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 **유치에 불리**

* ex) 일본 전자상거래업체인 센슈카이사는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과 보세상태에서 보수작업(선별·재포장)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부산FTZ에 통합물류센터 설치 희망

○ 최근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지리적 이점** 등 때문에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자국의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新**물류수요 발생**

○ 그러나 FTZ내에서 **선별·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해외로 집배송**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초래**

* 전자상거래 물품은 금액은 소액이나 수량이 많아 건별 신고시 물류비용 과다

◈ **(관계부처)** 관세청, 산업부

☐ **(해소방안)**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 등의 **해외 집배송 거점 물류센터**를 **국내 FTZ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

○ FTZ내 **국외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건별→일괄)하고 **간이 국외반출 신고시스템 구축**(보완 또는 신설)

* 간이신고절차 및 행정제재에 관한 법률 근거와 고시상의 적용기준 등 마련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산업부, 12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 12월)

☐ **(기대효과)** 일본 센슈카이사(예상물동량 6,000TEU/年) 화물 유치에 의한 부가가치 年 150억원* 및 상시 일자리창출 300명**

* 교역량 6,000TEU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액(年) : 6,000TEU × 2,250$(1TEU당 작업비 1,300$, 해상운송비 700$, 셔틀비 120$, 보관료 130$) × 1,100(환율) = 약 150억원
** 선별, 재포장, 배송관련 소요 인력 300명

○ 장기적으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물류센터의 국내 FTZ내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면 추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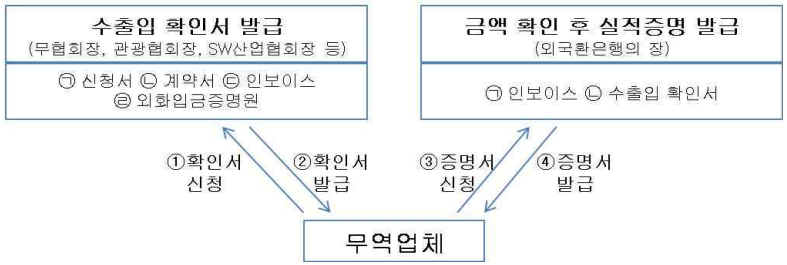
4. 용역·전자적형태 무체물 수출실적 확인절차 간소화

◈ **(애로)** 현행 제도는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2개 기관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

* 물품의 경우 거래형태에 따라 하나의 기관(한국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을 동시에 지원

○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확인기관에서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 입금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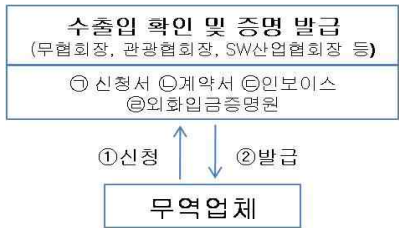


◈ **(관계부처)** 산업부

☐ **(해소방안)**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을 現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일원화**(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3.9)

* 외화입금액 확인은 수출입 확인기관이 민원인이 제출한 외화입금증명원으로 대체

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개선 후)



☐ **(기대효과)**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일원화로 무역업체의 편의 제고 및 발급기간 단축으로 실적 증명을 활용한 무역금융 이용 제고

5. 수출화물 수송을 위한 인천공항의 주차료/주기료 인하

◈ **(애로)**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 및 **물류단지 내 주차료** 등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되어 **물류비용 부담 과다**

○ 화물항공기의 착륙료, 주기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여객기와 유사 수준**으로 징수하여 화물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감면 필요

* 인천공항 토지 이용료 : 화물터미널은 여객터미널의 85% 수준으로 부과

** 싱가폴 공항 : 화물기의 착륙료는 50% 경감 적용(정기화물기, '13.4~12월까지)

○ 수출입 물품의 이송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터미널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요청**

* 주차요금 : (소형) 15분마다 500원, 1일 10,000원, (대형) 15분마다 600원, 1일 12,000원

◈ **(관계부처)** 국토부

☐ **(해소방안)** 국내 화물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적정 무료주차시간 연장 검토** 등 추진

① 화물항공사에 대하여 **노선신설·증편·환적 등** 화물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검토**('13.9월)

② 향후 **적정 무료 주차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료주차시간 연장 검토('13년말)

* 일부 중소물류업계는 수출입물류 상/하차 소요 적정 시간을 2~4시간으로 응답('13.5월)

☐ **(기대효과)** 화물항공사 **물류 경쟁력 제고** 및 **화물차량 주차요금 부담 경감**

6.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 **(애로)** 기업입장에서 **관세조사는** 기업활동 위축, 일시적 자금운용 경색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 세관의 현장 세무조사(20~60일)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 거액의 추징에 따른 **일시적 자금운용 경색** 등 **경영상 애로** 발생

◈ **(관계부처)** 관세청

☐ **(해소방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1년)

< 대상 기업 >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중 수출비중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증가시키거나,
- 고용노동부가「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② 당해연도 수출입실적이 있는 신설법인으로 국내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

※ 다만,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실시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 기대

Ⅴ. 실천계획(Action Plan)

1. 시장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	연중	산업부
▪ 환변동보험 보험기간 확대	'13.7월	산업부
▪ 보험료 할인연장 등 수출중소기업 부담경감	'13.7월	산업부
▪ 외환거래 서비스 강화	'13.7월	기재부
▪ 환위험 관리교육 강화 및 지역설명회 개최	연중	산업부 중기청
▪ 이란 비제재품목 수출기업 수출애로 해소	연중	산업부 해수부, 중기청
▪ 이란 제재품목 수출기업 피해 지원	연중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 일본 내수시장 진출 지원	'13.12월	산업부
▪ 일본기업 투자유치 강화	'13.11월	산업부
▪ 신흥시장, 수출부진품목 타겟마케팅 집중 지원	'13.12월	산업부
▪ 해외시장정보 지원체계 보강	'14.上	산업부

2.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중국 현지 유통망 진출 강화	'13.12월	산업부 중기청
▪ 농수산식품 중국 수출 지원	'13.12월	농식품부 해수부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중국 내수시장 진출 물류기반 구축	'14.上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확대 및 고도화	'13.12월	산업부
▪ 한·중 신산업 기술교역 촉진	'14.上	산업부
▪ 중서부개발 참여기반 구축	'13.12월	산업부
▪ 중국 4대 권역별 맞춤형 진출 지원	'13.12월	산업부
▪ 한·중 양국간 통상협력 및 시험인증 협력강화	'14.上	산업부
▪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확대	'13.12월	관세청

3. 수출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다수·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상호인정 및 유사인증제도 통합	'14.12월	산업부
▪ 중소무역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무역 요금체계 개편	'14.7월	산업부
▪ 자유무역지역(FTZ)내 관세행정 제도 개선	'13.12월	관세청/산업부
▪ 용역·전자적형태 무체물 수출실적 확인절차 간소화	'13.9월	산업부
▪ 수출화물 수송을 위한 인천공항의 주차료/주기료 인하	'13.9월	국토부
▪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13.7월	관세청

참고 3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기재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희망의 새시대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13. 7.11(목) 10:00		배포 일시	2013. 7.10(수) 13:00
담당 부처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과장 윤성욱, 서기관 박재진, 사무관 강창기 (044-215-4510, 4511, 4512)	
		신성장전략과	과장 박금철, 사무관 심재승(044-215-4550, 4552)	
		지역경제정책과	과장 배지철, 사무관 최원석(044-215-4570, 4572)	
	산업부	산업정책과	과장 정대진, 사무관 최은신(02-2110-5111, 5115)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 최임락, 서기관 윤성배(044-201-3715, 3707)	

제목: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1. 행사개요

□ **현오석 부총리**는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여

○ 지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5.1일)**에서 발표한 대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음

* 규제개선 중심의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

※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중 **입지규제 개선·혁신도시 개발 촉진** 관련 분야는 **국토부장관**이 보고, **산업부장관**은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 확대방안**을 보고

□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하였음

□ 현오석 부총리의 **보고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음**

2.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 지난 5.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정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 그 결과 **총 38건의 과제** 중 **1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으나, **4개는 완료, 33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진행중인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업절차 등이 마무리** 되면 **4/4분기부터 공장 착공 등의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

□ **현장 대기중인 프로젝트 6건**의 경우 **1건이 지연**되고 있으나, 나머지 **5건은 정상 추진중**

① (지연과제) 지주회사 규제 개선 (기대 투자효과 : 약 2조원)

○ **외투법인**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완화**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보류**(6.19일)

*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 반대의견 제기

○ **향후** 공정위 사전협의 등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을 재추진**(12월)

②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 (기대 투자효과 : 1단계(~'16) 약 3조원, 2단계('17년~) 약 5조원)

○ 가용 용지가 소진된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를 활용**토록 지원

○ 공공기관·기업간 **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에 합의**(5.24일)하고, 공공기관의 **저장시설 지하화**를 위한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 진행중**(6월~9월)

○ **향후** 환경영향평가(10월), **입찰공고**(12월) 후 **착공 추진**('14.2월)

③ 산업단지 내 토지임대차 개선 (기대 투자효과 : 약 1조원)

○ 당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산단내 **부지와 공장의 분리 임대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 **투자기업의 입장 변경**(부지임대 요구 → 합작법인에 부지 출자)으로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내**에서 해결방안 마련

○ **향후** 이사회 승인(7월), 현물출자(8월), 부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10월)을 거쳐 **공사착공 추진**(12월)

④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 (기대 투자효과 : 약 1조원)

○ **열병합발전소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산단내 열병합발전소에 **LNG이외의 연료도 허용**

○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6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0일~)

○ **향후 환경영향평가 완료**(8월), **산집법 시행령 개정**(9월) 이후 **열병합 발전소 착공**(11월)

⑤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가칭: 메디텔)**의 건립**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 **향후 시행령 개정 완료**(8월) 후 **세부 인·허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9월)

* K병원은 동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메디텔 설립을 추진중이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14년 중 착공예정

⑥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 연말까지 **육상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사업이 **진행중인 14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가능여부** 조속 결정

○ **14개 단지**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5.24일, 7.8일) **4개 단지가 입지 적합, 8개 단지**는 산림 훼손·소음 등 **환경피해 우려로 부적합** 결정, **2개 단지**는 기업이 사전검토 신청 중단

* 5.24일 적합성 판정을 받은 2개단지중 1개 단지는 사업허가 취득절차 진행 중(7월)이며, 다른 1개 단지는 사업허가 신청(8월) 준비중

○ **향후 풍력단지 구축 가능 지역을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2월)

3.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골격

□ 2단계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①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②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③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2)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1단계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 조속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맞춤형으로 투자 애로를 해결**

① 기업도시 개발 지원

○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 요구***로 투자 애로

*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 대상, 보증수수료만 약 230억원 수준

⇨ **계약금 비중을 상향 조정**(10→20%)하고 **질권 설정**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되,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 ('16년까지 4천억원,'17년 이후 1.1조원 투자효과)

②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 **바이오·관광 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특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

* 동 특구는 '08.12월 지역특구 지정 이후 개발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해당 지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산업단지 조성('13.5월)

⇨ 연구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특구계획 변경 추진** (2~3년간 약 6천억원의 투자효과)

③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

○ 기업들이 **공장 주차장·지붕** 등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나,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업추진 여부 불확실 등으로 애로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을 통해 대규모 면적변경 등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 경감** (1~2년간 약 5천억원의 투자효과)

④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지원

○ 산단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산단 내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

* 현재 관련 규정상 산단 내에 총 면적의 3% 수준 여유녹지 존재

⇨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지자체-기업간 협의체**를 가동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
(3년간 약 5조원 투자효과)

⑤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 임해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부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로 투자 애로

⇨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하는 방안 마련 (약 2조원 투자효과)

(3)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

□ 제품 Life-cycle 단계별 규제·애로 해소

○ **(기획·개발 단계) 정부의 R&D 융·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일괄심사제를 도입**

- 인문·기술간 융합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

* 콘텐츠(영화제작, 광고, 출판), 부가통신 등

☞ **국내 융·복합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13년 현재 75% → '17년 90%**까지 제고

○ **(출시·인증 단계)**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준이 없는 융·복합 신제품은 **인증 Fast Track**을 통해 6개월 내 적합성인증 부여

*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 의류,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 보행기, 특수 방범·방충망 등을 우선 검토하여 '13.10월 10개 품목 선정

-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무화**

☞ **복수인증 상호인정**으로 **인증비용**(△15%)·**소요기간**(△16%) **경감**, **인증 Fast Track**으로 제품개발 후 6개월 내 **조기 사업화**

○ **(판로확보 단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고,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R&D·금융 등 우대

☞ **융합선도기업 매출 증가 및 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

(4) 입지규제 개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1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 단독주택	· 아파트
·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 공장(공해 공장 제외)	· 공해 공장
·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 판매시설(3천㎡이상)
·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

2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 **(첨단산단내 시설 융·복합 촉진)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 허용**

☞ **도시첨단산단**에 **다양한 시설 입주** 및 **토지 공급가 인하**

○ **(유통업무설비 융복합화 촉진)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 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하여 설치 허용

☞ 유통기업에 대한 **사업서비스 활성화** 및 **거래비용 축소**

※ (예) 현재 화물터미널·도매시정 등이 집적된 시설에 정보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향후 입지 가능

○ **(복합 건축물 활성화) 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등까지 확대**

☞ 대규모 고층 건축물의 **입주수요 확보**(사업성 제고)가 용이하여 **건설투자의 촉진**

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 **(택지지구 계획 변경)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 **77개 지구**(일반택지 72, 신도시 5)는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하여 **용지매각 촉진, 편의시설 확충** 등 가능

○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면적 범위를 2배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 **전체 면적 대비 10% 미만인 개발행위**까지는 **계획변경 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1년→2개월)**

○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해 **부지의 활용성 제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개축 등 활성화**

○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 (예) 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3천억원 상당)를 기부채납한 사례

4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 **(케이블카 입지 확대)** 공원지역 등 이외에서는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 **약 1,000억원 투자효과**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 **(산림 중간복구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개발 완료 이전에 산지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 **조기 사업개시** 및 **단계별 복구대상 면적 감소**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임)**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 허가기준을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 산지의 특수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지개발** 가능

(5) 혁신도시 개발 촉진

지역투자 확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촉진**

1 용도변경 허용 등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국토부·지자체·이전기관 간 협의체 운영)

○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KAMCO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 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

○ **유찰이 반복되어 재공고**할 경우 **매각가격 조정을 허용**하고, PFV·자산유동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매각방식 허용**

☞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 장기적으로 **'+α'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및 대학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기업)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 취·등록세 면제, 지방소재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재산세 5년간 면제

- **(대학)**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

☞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 입주, 5천명 고용창출, **연간 최대 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 기대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현부총리**는 **1단계 대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해결 과제' 중심**의 대책이었던 반면,

○ **2단계 대책**은 융·복합 활성화, 입지규제 경직성 개선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인 만큼,

○ **개선되는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수록 투자효과가 커지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현부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 국회 협의,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국회·지자체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함

□ **현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 수립**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투자 적기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묘'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함

[별첨 1]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관계부처 합동)
[별첨 2]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별첨 3]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산업부)
[별첨 4]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투자활성화 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윤성욱 (044-215-4510)	박재진서기관(044-215-4511)
		강창기사무관(044-215-4512)
신성장전략과	박금철(044-215-4550)	심재승사무관(044-215-4552)
지역경제정책과	배지철(044-215-4570)	최원석사무관(044-215-4572)
국토부 도시정책과	최임락(044-201-3715)	윤성배서기관(044-201-3707)
미래부 정보화기획과	남석 (02-2110-2904)	정준욱사무관(02-2110-2908)
산업부 산업정책과	정대진(02-2110-5111)	김준겸사무관(02-2110-5346)
		최은신사무관(02-2110-5115)
환경부 정책총괄과	김승희(044-201-6640)	홍경진서기관(044-201-6641)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과	배호열(044-201-2111)	정경석사무관(044-201-2119)
중기청 정책총괄과	변태섭(042-481-4537)	김민지사무관(042-481-3955)
조달청 우수제품과	정영옥(070-4056-7281)	김성환사무관(070-4056-722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042-481-5099)	이은정사무관(042-481-5170)
산림청 산지관리과	김용관(042-481-4140)	조성동사무관(042-481-4123)

참고 4 제2호 안건(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이 자료는 2013년 7월 11일(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2.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3.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4. 혁신도시 개발 촉진

2013. 7.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경위 및 주요 골격 ····· 1

Ⅱ.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 2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3

2.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 7

3. 입지규제 개선 ····· 15

4. 혁신도시 개발 촉진 ····· 26

Ⅲ. 세부 추진계획 ····· 30

Ⅰ. 추진 경위 및 주요 골격

(1) 추진 경위

□ 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5.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2단계 대책** 마련 착수

○ 5월초부터 **「투자 활성화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가동하여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과제를 발굴**

(2) 2단계 대책의 주요 골격

□ 1단계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속 지원**(5개 과제)

□ **융·복합, 기업 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제품 Life-cycle 단계별**로 **융·복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12개 과제)

○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입지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18개 과제)

* 최근 기업들은 입지규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대한상의, '13.6)
: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입지 분야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

○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6개 과제)

Ⅱ.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중점

○ **제도개선** 및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투자로 연결**

(1) 기업도시 개발 지원

□ **(현황)** 2개의 기업 컨소시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나, **엄격한 대금 지급 조건으로 애로**

○ 공공기관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감정평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90%는 이행지급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 기업이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와 **보증금의 15%***에 달하는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 2개 컨소시엄의 이행지급보험 증권 발급 보증수수료로 약 230억원 소요

○ 한 컨소시엄은 우선 **1,000억원을 별단 예금으로 예치한 후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았으나, **과도한 현금 예치**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 애로**

○ 또 다른 컨소시엄은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 면제를 요구**하며 **매립권 양수 계약 체결 지연**

□ **(추진방안)**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지급 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

○ 대신에 **계약금 20% 상향조정, 권리질권 설정** 및 손해배상 등 **사후 이행장치를 강화**(면허권 양수·양도 협약서 개정)

□ **(기대효과)** '16년까지 **4천억원**, '17년 이후 **1.1조원** 투자효과

(2)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 **(현황)** **"바이오산업 및 관광·레저산업" 연계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에 **자동차연구시설(주행시험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 **지역특구위원회***는 **당초의 특구지정 목적, 지역적 특성**(농업지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12.5월)

* 위원장 : 지경부장관,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7명 등 25명 이내 ('13.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기청으로 이관, 위원장(중기청장) 변경)

○ **기업**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일부 변경 추진중**

□ **(추진방안)** 해당 지자체가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구계획 변경(안)을 마련·신청**하고, 주관부처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위원회 상정**(12월)

* '08.12월 지역특구 지정 이후 개발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해당 지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산업단지 조성('13.5월)

□ **(기대효과)** 2~3년간 **약 6천억원**의 투자효과

(3)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

□ **(현황)** 기업들이 준공된 산단내 **공장 주차장이나 공장지붕 등을 활용하여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 하나, 현행 법령(산입법)은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의무화**

○ **경미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없이 하위계획인 **실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주요 시설 변경이 아님에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 불확실성** 등의 **애로 발생**

□ **(추진방안)**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없는 입지시설 대상에 대한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

- 대규모 면적변경 등 **기반시설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면제**

* 예)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이상 또는 10만㎡이상 변화를 가져오거나,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치업종 변경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산단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 **(기대효과)** 1~2년간 **약 5천억원**의 투자효과

(4)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지원

□ **(현황)** 산단 입주기업들(7개)이 **기존 공장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

○ **지자체**는 **녹지를 해제***하여 공장부지로 용도를 **전환할 의사**가 있으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비율(10~13%) 초과 부분에 한함

- 보존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를 위해 산단내 녹지에 대한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

□ **(추진방안) 중앙부처-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산단내 **녹지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장증설 지원 추진

○ 우선 녹지해제 대상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녹지해제 후 공장부지로의 활용 추진

* 녹지 해제 및 공장부지로 용도전환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 → 광역단체장이 승인

○ **관계부처-지자체-공장증설 희망 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

□ **(기대효과)** 착공후 3년간 **약 5조원** 투자효과

(5)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 **(현황)** 기업이 해안 인근 지역에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공장증설**을 추진중('12.7~'14.6)

○ 그러나, 원료 하역과 수출제품 선적을 위해 필요한 **부두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로 애로

□ **(추진방안) 관계부처(산업부·해수부)가 협업**하여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연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 강구**

○ **현장방문 등을 통한 3개월간의 실무 협의**를 거쳐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 마련

→ **7월 중 부두건설 공사 착공 지원**

○ **인근지역 피해가 없도록** 공장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애로 지속 해소**

* 양식어업 피해 예방 및 연근해 환경오염 방지 등

□ **(기대효과) 대규모 외국인합작 투자공장**(총 2조원) 건설 가동

2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

○ 융·복합 제품의 Life-cycle **(기획·개발 → 제품출시·인증 → 판로확보 등) 단계별 규제 및 제도 개선**

(1) 융합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방향

□ 범부처 융합규제애로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융합규제·애로 실태조사***('13.4~5월) 등을 통해 **72건의 규제·애로 발굴**

* **ICT 융복합 저해 규제(20건)**는 개선방안 기발표(7.8일 미래부) (☞ 참고2)

○ 발굴된 과제중 41건은 **금번 대책을 통해 해결**

- **인증제도 정비, R&D 지원체계 마련 및 판로 확대** 등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통해 일괄 해결 추진

- 신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관련 사안은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애로 해소**

* 단계적 심사를 병행 심사로 변경하여 심사기간 단축(15개월→12개월), 의료기기 심사시 Fast-track(1년→6개월) 적용 대상 확대(36%→50%이상)

○ U-헬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11건은 별도 대책**을 마련

< 융합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주요 내용	처리방향
기획·개발 (8건)	R&D 지원, 특허심사 체계 개편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제품 Life cycle별 대책 마련
출시·인증 (21건)	인증 요건 부재, 복수인증 등	
판로확보 (8건)	높은 가격 등 초기 시장 진입 애로	
인허가 관련 (4건)	허가 간소화, 진입 규제 완화 등	관련법령 제·개정
ICT산업 규제(20건)	인터넷 및 ICT 규제, 방송통신융합 등	관련법령 제·개정
U-헬스 (6건)	원격진료, 의료/건강정보 활용 제한등	시범사업후 입법 조치
지능형 교통시스템(5건)	신기술 승인절차, 운행 법규 등	국무조정실 부처협업과제

(2) 단계별 규제·애로 해소

[기획·개발 단계]

□ **(현황)** 현행 산업 지원체계(R&D·인력 지원, 특허체계 등)가 **개별 업종·품목 중심**으로 규정되어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저해**

□ **(개선방안)**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장려되도록 **관련 법·제도 체계**를 **개편**

○ **(융합형 R&D지원 확대) 정부 R&D 융합기술 투자**를 '13년(2조원)에서 '17년까지 **매년 정부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 '12~'16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

- 부처 R&D사업 예산 조정·배분시 **융합성과가 우수한 사업 우대**

* R&D사업 중 **우수한 융합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반영('14년)

- 변화한 융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융합기술 분류 코드** 추가('13.11월)

* 전부처 수요조사(7~8월) → 적합성 검토(9~10월) → 개정 코드 반영 ('13.11월)

○ **(인문·기술 융합 촉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3.11월)

*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각종 조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부여

- 정보서비스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만 한정된 인정범위를 **콘텐츠(영화제작, 광고, 출판), 부가통신** 등의 분야로 확대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비이공계 자격인정 범위 점진적 확대

○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제품의 경우 현행 특허별 개별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

* 출원별 심사착수시기 및 심사기간 불일치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 해소
* 세부운영방안 마련(9월) → 시범운영(12월) → 특허법 시행규칙 등 개정('14.3월)

< 적용 예시 : 스마트폰 >

· **(현행)** 전원기술(13개월), 입력장치기술(14개월), SW기술(16개월) 등 특허심사 대기
→ **(개선)**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평균 2개월 단축)

- 단일기술별로 편제된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13.9월)하고 **심사처리기간도 단축**('13년 13.3개월→'15년 10개월)

□ **(기대효과)** 선진국 대비 **국내 융·복합 기술 수준**을 '13년 현재 75%에서 **'17년 90%까지 제고**

[제품 출시 · 인증 단계]

□ **(현황)**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융합 제품 특성상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복수인증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 국내에는 법정인증 109개(안전 등 필수 의무인증 38개, 제품 신뢰도를 위한 임의인증 71개), 지자체인증 44개, 민간인증 81개 등 총 234개의 인증 존재

○ 제품 허가 요건인 **의무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 자체가 안되거나**,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임의인증**을 받지 못해 **성능·안전성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

** '08년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인규격 적용이 어려워 4년간 인증 지연

□ **(개선방안)**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 **Fast Track** 등을 통해 해결하고, 복수인증은 **일괄 인증신청 등을 통해 간소화**

○ **(인증 Fast Track)** 개별법령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업체 신청시 6개월내 적합성 인증***

*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합성 인증
* (절차) 인증신청→인증협의체 구성 및 인증기준 마련→시험검사 및 적합성인증→사후관리

- 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융합인증애로지원센터 설치**(기표원, '13.8월) 및 **융합인증협의회 개최**(분기 1회)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시장수요 파악, 개선방안 논의)

< 검토대상 제품(예시) >

◇ **(내진용 복합소재 건축보강재)** 기존 보강재에 비해 높은 강도와 기대 수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규격, 성능, 평가 등의 규정이 건축법령에 부재

◇ **(환경반응형 진단·감응소재)** 불산 등 유해물질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소재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성능·신뢰성 인증규정 부재

○ **(선제적 인증기준)** 시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웰빙, 실버, 사회적 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 개별 인증기준 제정**

- **중소기업 실태조사**('13.6~10월)를 통해 **대상 품목 확정**

* ('13년 예정 품목)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 셔츠,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보행기, 바이오 닥터, 보행분석 시스템, 광섬유 의류, 트리플 자전거

○ **(복수인증 간소화)**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무화*** 하고, 복수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부 등 **5개 부처 9개 인증간** 중복시험항목 시험성적서 **상호인정**('13.12)

- 인증제도의 **사전 중복방지**를 위해 법정인증 신설·확대시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인증일몰제 운영 등의 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14년 개정)

○ **(인증경비 인정)** 융·복합 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인증 경비를 정부 R&D 간접비로 인정**(국가R&D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13.9월)

□ **(기대효과)** 복수인증 상호인정으로 **인증비용 15%**(168→144만원), **소요기간 16%**(56→50일) **경감**, 인증 Fast Track으로 제품 개발 후 6개월 내 조기 사업화 가능

* 인증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기업 생산일수 증가 및 인증비용 부담 경감 등으로 연간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판로확보 단계 〕

□ **(현황) 융·복합 제품**은 기술력·상품성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초기 판매가격** 등으로 **시장보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최초 시장진입 애로**

* 범용對융합제품 가격: 일반자전거 약 20만원 vs 전기자전거 약 150만원

□ **(개선방안)** 융·복합 선도 기업의 **원활한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 마련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중기청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3.12월)

* 공공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선구매품목으로 구입

- 첨단 융합제품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용이**하도록 요건 완화**(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 '13.8월)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공공기관은 경쟁입찰 과정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구매 가능

** 품질·기술심사시 기존 점수방식(평균70점 이상)에서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정)** 산업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R&D, 금융, 판로개척 등에서 우대**('13.10월)

*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 선도기업 **선정기준·지원시책**(산업부-중기청 협업과제) **마련**('13.8월) → **선도기업 20개사 선정**('13.10월) → 30개社 추가 선정('14년)

○ **(융합신제품 구매자 지원)** 소비자의 융합 신제품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평판 제고 및 판매 촉진**

* 융합신제품 구매지원 세부방안(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 수립('13.10월) → 사업 공고('14.1월) → 사업대상 선정('14.3월)

- 선도 소비그룹* 대상 **융합 신제품 사전체험 기회**(품평회 등)를 제공하고, 피드백이 가능토록 **품평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동호회, 파워블로거, 주부, 도·소매업자 등

□ **(기대효과)** 융합선도기업의 매출 증가 및 융합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향후 융복합 활성화 추진 방향 >

◇ 기업건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융합애로**를 주기적으로 발굴(Bottom-up)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융합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선과제 도출

○ **ICT, 바이오산업 등 융합수요가 많은 분야**의 경우 협회·단체 및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발굴

◇ 주요 **정책·법령상의 융합저해 규제**를 발굴(Top-down)

○ **정책융합성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각 단계에서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융합친화적인 정책 촉진

* 평가모델 마련 및 사후적 시범평가 대상(예시:융복합이 활발한 로봇, 자동차분야 산업정책 등) 선정('13.8월) → 사후적 시범평가 실시('13.10월) → 제도화 추진('14.3월~)

○ **범부처 융복합 협력과제**(예: 지능형 교통시스템) 수행시 사업제안 단계부터 사업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융복합 규제 발굴, 개선 병행**

* 산업융합촉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발굴된 사안은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해결**

○ U-health 등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기술/산업 결합형, 이종산업 결합형 등의 규제 해결을 위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총리 주재, 산업융합촉진법)를 정기적으로 개최

- 인터넷산업 및 방송통신융합 규제의 경우 **ICT 전략위원회**(총리 주재, ICT 진흥특별법 '14.1월)를 분기별 개최하여 해결

* 융합규제개선추진단(산업부), 인터넷규제개선단(미래부)를 통해 실무협의

[참고 1] ICT 관련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추진현황 (미래부, 7.8일 기발표)

□ **추진경과**

○ **ICT 유관 협회·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실제 애로를 반영한 **'손톱 밑 가시' 규제 발굴**(4~5월)

- **인터넷 활성화, 방통 융합, ICT+전통산업 간 접목·확산**의 3대 분야 과제 도출

○ 도출된 과제 중 관계부처·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20개 우선 추진과제** 선정(5~6월)

* 규제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검토과제는 별도 선정

□ **주요 내용**

○ **(우선 추진과제)** 현장 대기중이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인터넷 규제 개선, 방통 융합 활성화** 분야 **20개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분 야	세 분 류	
인터넷 규제 개선	인터넷 신산업 장애규제 개선	사물간 인터넷 사업 진입규제 완화,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법 제정 등
	국내 인터넷의 개방성·자율성 제고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멀티 브라우징 이용환경 조성 등
	인터넷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개선	정보보호산업 진입규제 완화,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 등
방송-통신 융합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인터넷 모바일 광고 활성화 등

○ **(중장기 검토과제) ICT+전통산업 간 접목*** 관련 **과제**

* ICT+국토·교통, ICT+문화·엔터테인먼트, ICT+의료·보건, ICT+금융·상거래, ICT+에너지·환경 등

○ **(추진체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및 정부내 '**ICT 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 중심으로 상시 발굴·해소

□ **향후 계획**

○ **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 성과점검** 추진

3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개발사업의 변경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입지규제 경직성 개선** 및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활성화**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입지수요에 대응

② 시설 용도별 칸막이를 완화하여 **시설 융·복합 활성화**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을 현실화**

④ **산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과도한 제한을 완화**

◇ 입지규제의 개선으로 **난개발**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

(1)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①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 **(현황)**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Positive 방식)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산업의 분화, 융복합 등으로 새로운 입지수요가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Negative)**으로 전환*(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14.2월)

*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시의회 의결) 필요

○ **(대상지역)** 판매, 업무, 공장, 숙박 등의 **용도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입지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4개지역은 전국토의 약 12%)**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일종으로서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전국토의 약 11%)

○ **(규제수준)** 과거 입지규제 완화시 난개발 초래 사례*를 감안하여 **규제수준**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94년 준농림지역(전국토의 약 27%)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나홀로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판매시설 등이 난립

- 다만, 3천㎡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입지를 허용**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13.6월 국토계획법 개정)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 단독주택 ·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 공장(공해 공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 창고 · 관광휴게시설 · 수련시설 · 종교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 운수시설 · 문화·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등	· 아파트 ·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 공해 공장 · 판매시설(3천㎡ 이상) · 업무시설 · 위락시설 등

□ **(기대효과)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

○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른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13.6월 국토계획법 개정), **경관심의**** 시행('13.6월 경관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

*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의 허가기준 충족시에만 허용

** 지자체가 정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형태·색채·배치 등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사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지역에서만 가능 → 특별히 조례가 금지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능

- 또한, **반려동물화장시설*** 등 새롭게 수요가 생겨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던 새로운 입지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

* 현재 반려동물화장시설의 건축허가가 어려워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무허가 화장장에서 처리

②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지원**

□ **(현황)** 현행 건축법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세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 변경시 건축물 대장 변경 신고 등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요

□ **(개선방안)**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포괄분류**(이용형태 설명)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적기준도 폐지**(건축법 시행령 개정, '14.3월)

* 예) **휴게음식점**(300㎡ 미만), **일반음식점** → **식품접객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 **체력단련시설**

□ **(기대효과)** 다양한 형태의 **근린 생활시설 창업이 촉진**되고, 업종 변경시 건축물대장 신고 등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절차·비용 감소**

[2] 시설 융·복합 활성화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 **(현황)** 도시지역내 지식,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를 위한 도시첨단산단*은 **다양한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산업 융복합 저해**

* 도시내에서 지식, 문화, 정보 등 첨단산업의 용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규모(1만㎡ 이상) **산업단지**(전국 11개 지정)

○ 도시첨단산단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등은 **입주가 어려워** 투자 저해

○ 도시첨단산단을 다른 개발지구*에 중복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저렴한 용지 확보에 애로**

*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도청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 도시첨단산단 지정은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만 할 수 있어 **국가적 용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

□ **(개선방안)** 복합입지 촉진과 공급가격 인하 등을 위해 **제도 개선** (산입법 개정, '14년)

○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도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복합입지 공급확대

○ 다른 개발사업지구(지원시설용지)도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을 허용하여 조성원가 수준으로 **용지 공급가 인하**

○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직접**(미래부와 사전 협의) **지정권한 부여**

□ **(기대효과)** 도시첨단산단에 **다양한 시설 입주** 및 **토지 공급가격 인하** 가능

[사례(계획)] D신도시내 자족시설용지(테크노밸리, 문화 디자인밸리) **일부**를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을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 추진

* 산단총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광역, 기초)와 협의 후 지정

- 지구내 연구·벤처 시설 등이 입지하는 **테크노밸리**(1,554천㎡) 및 **문화디자인 밸리**(122천㎡)를 조성원가로 공급시 기업부담 **약 3천억원** 경감

② **유통업무시설에 금융시설 등 융복합 입지 지원**

□ **(현황)**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에 금융·정보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아 융복합에 필요한 시설 확충 곤란

* 물류단지·터미널, 농수산물시장, 화물적하시설 등

□ **(개선방안)**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 유형**에 금융·교육·정보처리 시설 **포함**(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13.8월)

□ **(기대효과)** 유통기업에 대한 **사업서비스 활성화** 및 **거래비용 축소**

[사례] K시내 공산품배송단지·기계공구단지·화물터미널·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집적된 시설에 **보험이나 정보처리 관련 부대시설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업체, 상인, 고객들이 겪고있는 업무상 불편 해소 가능

③ 복합용도 건축물 활성화

□ **(현황)** 현재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택 + 숙박시설(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등의 **복합 건축**이 허용

□ **(개선방안)** 상업지역 외에 **준공업지역**(구로구 등) **등**까지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을 허용**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4.3월)

* 주류판매업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예: 체육시설, 회의장 등) 허용

□ **(기대효과)** 대규모 고층 건축물의 **입주수요 확보**(사업성 제고)가용이하여 건설투자의 촉진

[사례] P지자체는 상업지역 24.0㎢외에 준공업지역 14.9㎢(여의도 면적 5배)를 복합 고층 건축물 입지로 추가 활용 가능

(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개발계획의 변경요건 합리화]

① 준공된 택지지구(신도시 등)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 **(현황) 신도시**와 **일반택지**는 준공후 **장기간(신도시: 20년, 일반택지: 10년)** 개발**계획의 변경이** 금지되어, 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개선방안)** 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 '13.10월)

□ **(기대효과) 총** 77개 지구(일반택지 72, 신도시 5)는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하여 용지매각 촉진, 편의시설(어린이집 등) 확충 등 가능

[사례] '10년에 준공된 Y시 H지구(214만㎡)는 준공 된지 3년이 경과했으나, 경기 여건 변동 등으로 대규모 상업·업무, 주택용지 등 미매각 발생(2,200억원 이상)
- 현재 '20년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나, 지침 개정으로 '15년부터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타용도 개발 가능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건축물, 기반시설 등 일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 **(현황)** 계획 변경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입안,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년이상 소요되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나**

○ **경미한 변경**(변경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 없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여 **처리기간이 2개월로 단축**

□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의 면적 범위를 **2배 확대(5% → 10%)**(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14.2월)

□ **(기대효과)** 전체 면적 대비 변경면적이 10% 미만인 경우까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어 **기간단축(1년 → 2개월)**에 따른 금융·행정 비용 절감

[사례] Y시 P리조트사업(총사업비 1,800억원) 추진과정에서 면적 8%증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부담하였던 **10개월 기간이 단축되고, 80억원의 비용 절감** 가능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

□ **(현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규제

○ 그러나, 존치필요성이 없더라도 20만㎡ 이하로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 **(개선방안)**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 '13.8월)

□ **(기대효과)** 시가지 인접지역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확충 가능

[사례] N지자체는 시가지에 인접한 **약 16만㎡ 개발제한구역**을 실내 체육관, 보육원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

[개발 절차 · 기준 개선]

①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활성화

* 도서관, 유원지, 전신전화국, 학교, 공공청사 등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시설 종류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개발방식 모두 가능)

□ **(현황)** 기관이전 등 여건 변화로 더 이상 같은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제권자인 지자체가 **특혜시비**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

□ **(개선방안)**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절차를 마련**(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14년)

○ 다만, 시설 해제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일정부분 환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등) 하여 특혜 문제 해소

□ **(기대효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해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유도

[사례] A회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타용도로 사용이 어려웠던 기존 전신전화국을 자회사나 주민편의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

□ **(현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지매입방식과 사업내용**에 대해 **일정 제한을 부과**

○ **(부지매입)** 전체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 **수용방식만 허용**되고 일정 부분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환지방식*은 불가능**

* 금전 보상을 통한 토지매입 대신에 개발사업이후 조성된 토지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식

○ **(사업내용)**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주택의 35%를 임대주택(이중 40%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성이 크게 저하*

* 장기임대주택 **1호당**(60㎡ 기준) 금융부채 **77백만원** 정도 부담 발생

□ **(개선방안) 환지방식***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 '13.8월)

* 해제지역내 대지화된 토지(예: 대·공장용지·잡종지 등)에 한해 허용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사업성 제고**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아직 착공되지 않은(설계중 또는 보류) **'11개 개발사업**(경기, 경남 등 총 630만㎡, 여의도의 2배 규모)'을 원활하게 추진 가능

[사례] C시 S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년 GB해제 후 사업성 저하로 보류 중이었으나, 이번 개발기준 개선으로 임대주택비율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A시 재정부담 완화 가능

③ 적정 기부채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허가 조건으로 **과도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설치를 요구**하여 기업 투자 애로 및 사업 지연

□ **(개선방안)** 개발사업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기부채납** (예 : 면적 대비 25% 이내)이 이루어지도록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13.12월)

□ **(기대효과)**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

[사례] A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약 3,238억원)를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으나 가이드라인(25%)을 적용시 약 **1,328억원 경감 가능**

④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규제 완화

□ **(현황)** 첨단산업 집적화를 위한 도시첨단산단*과 장치·기간산업 중심의 국가산단에 동일한 수준의 **필지 최소면적 제한** 적용**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입법 제2조제8호)

** 필지란 토지를 분할·매각하기 위한 구획으로, 소규모 필지 난립 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산단내 산업용지는 필지별 **최소 1,650㎡ 이상으로 분할** 의무화

○ 이에 따라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도시첨단산단에 집적화하기 어려워, 첨단산업에 대한 소규모 입지 제공에 한계

□ **(개선방안)** 도시첨단산단의 **필지 최소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소규모 입지 제공**(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현행) 1,650㎡ → (개정) 900~1,650㎡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 **(기대효과)** 소규모 첨단산업을 도시첨단산단 내 집적화하여 산단 내 생산유발 효과 기대*

* 도시첨단산단 내 100개사 추가 입주 시 3,500억원의 생산유발 기대 가능

[사례] 2,500㎡의 산업용지는 2개로 분할·매각하는 것이 현재 불가(1개 기업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 시** 첨단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소규모 입지만이 필요**한 기업도 활용 가능(2개 기업도 활용 가능)

(4) 산지(山地)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① 케이블카 입지 확대

□ **(현황)** 공원, 스키장 등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케이블카는 산정상부에 설치가 가능하나, 공원지역 등이 아닌 산지에서는 정상대비 **표고 50%이하 높이에서만 설치가 가능**

○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안되는 불합리한 문제

□ **(개선방안)**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산지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13.10월)

○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

□ **(기대효과)** 표고제한 완화(산정상부 허용)를 통해 **약 1,000억원 투자효과** 및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등 기대(거제도 등)

②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부분(중간복구)준공 허용 확대

□ **(현황)**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단지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야 산지 복구준공**이 가능하여 투자불편 초래

□ **(개선방안)** 관광·산업단지의 경우에 **단계별 부분(중간복구) 준공**을 통한 사업개시 허용(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부분준공을 통한 **조기 사업개시** 및 **단계별 복구대상 면적 감소**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단위면적당) **감소**로 사업자의 **투자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례] C시 일반산업단지(3.4천억원, 192ha, '13~'17년)의 경우 현재는 '17년 전체준공(3개단지)이 완료되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하나

- **단계별 부분준공 허용시** '13~'14년 기반시설, '15년 1개 단지, '16년 1개 단지 **부분준공**으로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복구비 예치액**(143억원, 총 복구비의 67%)도 **경감가능**

③ 노천채광 허용 확대

□ **(현황)** 고령토의 노천채광은 대부분 경남 산청·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제한****으로 인해 고령토 채광에 어려움 발생

* 산청·하동군의 경우 도로 주변지역내 고령토 광맥이 약 70%정도 분포

** 현재 고속국도 및 철도 2km, 일반국도 1km 이내에서는 고령토 채굴 불허

□ **(개선방안)**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 등으로부터 보이는 지역에서도 허용**(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고령토 생산 확대**로 제철소 용광로 벽돌, 도자기 원자재 등 산업재 보급 기여 및 고령토 채광산업 활성화 기대

④ **채광 허용지역 확대**

□ **(현황)** 광물 채광은 평균경사도가 35°미만이고, **경사도가 25°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가능

□ **(개선방안)**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13.10월)

*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 다만,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능성**(산사태 등)도 **별도로 검토**

□ **(기대효과)** 재해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 애로를 해소

⑤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임**

□ **(현황) 지자체별로 산지의 특성, 경사도 등이 상이**함에도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투자 애로 및 불편 초래

* 입목축적은 지자체 평균의 150%, 평균경사도는 25도, 비탈면은 15미터 이하

□ **(개선방안)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산지관리법 개정, '13.12월)

*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의 계량적 기준을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산지의 특수성 등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별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활성화 기대

⑥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 **(현황)**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 등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관련절차 장기간 소요**

□ **(개선방안)** 채석단지 지정 등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채석단지 지정 허가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조회 등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 산림청장 허가신청을 위한 지자체 의견조회 등 소요기간(약 2개월) 단축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 지역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을 촉진**

* 혁신도시(10개) : 부산, 울산, 대구, 충북(진천·음성), 경북(진천), 경남(진주), 전북(전주), 광주·전남(광주·나주), 제주(서귀포), 강원(원주)

○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매각**해야 하나, **특혜시비 등으로 차질**

- **특혜시비 없이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혁신도시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등 **인센티브 제공**

(1) 용도변경 허용 등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 **(현황)**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종전부동산을 '15년 말까지 매각해야 하나, 일부 **입지규제 등으로 매각에 차질**

* 총119개 : 매각완료 62개(소속41 / 산하21), 매각예정 57개(소속5 / 산하52)

○ **도시계획시설***(예 : 연구시설 등)이나 녹지지역 지정 등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 활용도가 낮아 매각이 곤란**하고,

* 국토연구원(안양), 식품연구원(성남), 해양과학기술원(안산)은 연구시설로 지정

-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도시계획 변경도 어려워 부동산 매각이 지연

○ 또한, 여러번 **유찰**되어 매각가격을 변경하려 해도 재감정평가 등 신규**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매각방식*도 다양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공개경쟁입찰, 매입공공기관(LH·캠코·농어촌공사) 매각, 지자체 매각

□ **(개선방안)** 입지규제 개선을 특혜시비 없이 **신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및 지방 혁신도시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입지규제 개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연구시설, 공공청사 등)를 **신속히 해제**

- **국토부·지자체·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협의체 구성 '13.8월, 입지규제 개선 '14.12월)

○ **(활용가치 제고)**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게 하고,

* 매입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부는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이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15.12월)

- 용도변경 후 재매각하여 얻게되는 **개발이익은 국고로 환수**(혁신도시특별회계)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손실발생시 보전)

* 해당 지자체에는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대되도록 계획하여 이익공유

○ **(매각방법 개선)** 여러번 유찰로 인해 **재공고**할 경우,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공공기관별 내규 개정시 승인, 기재부)

- 단순한 매각방식 외에 PFV,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통한 매각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방식을 다양화**('13.9월)

• PFV : 부동산 개발 사업계획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 자산유동화 : 양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

※ 이전기관이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

□ **(기대효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효과**, 장기적으로 **+ α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

○ **종전부동산의 활용가치가 상승**되어 수도권의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투자기반이 마련되는 등 **상생발전 효과** 기대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현황)**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가 필요하나,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기업 등 유치에 애로(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0% 수준)

*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부지

□ **(개선방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대학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기업)**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국토부, '14.6월)

* 지식·문화사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로서, 지방세 감면 등 혜택

○ **(대학)**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교육부, '15.3월)

* 산업단지 내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기대효과)**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 입주, 5천명 고용 창출, **연간 최대 7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등 투자활성화 기대

* 1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단 3.9만㎡(전주 첨단산단 산업시설 규모) 지정시 55개 기업 입주, 611명 고용 창출, 연간 798억원 생산 유발 효과

[참고 2]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 **추진경과**

○ 기본계획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국무회의** 보고(5.14일)

- 개선효과가 큰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되, **규제유형별·주요산업별 Two-Track**으로 진행

○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추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6.21일) → 국무회의 보고(6.25일)

□ **주요 내용**

○ **(규제유형별)** 투자활성화와 직결된 **진입규제를 우선 전환**하고, **기업경영 부문으로 확대** 추진

- **기업활동 관련 규제 전체**(1,831건)를 대상으로 부처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개선대책 수립·보고**(8월중)

○ **(주요산업별) 주요 산업담당 10개 부처**가 **9개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산업별 핵심규제 개선

- **세부 개선방안**은 각 부처에서 검토하여 **7~10월중 각각 발표**

< 주요산업별 추진과제 현황 >

구 분	과 제 명	추진 기관
우선추진 과제	ICT 산업 신시장 창출 촉진	미래부·방통위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	문체부
	양곡관리 합리화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농식품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확충	산업부
	U-Health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복지부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	환경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국토부
	선박투자 및 부두운영회사제 활성화	해수부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	식약처
선도과제	벤처산업 육성 및 투지 활성화	국조실

Ⅲ.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1-1. 기업도시 개발 지원	농림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13.12월
1-2.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중기청	'13.12월
1-3.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	국토부	'13.12월
1-4.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지원	기재·국토·환경·산업부 지자체	'13.7월~
1-5.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산업부 해수부	'13.7월
2.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2-1. 단계별 규제·애로 해소		
2-1-1. 융합형 R&D 지원 확대	미래부	'13.12월
2-1-2. 비이공계 분야에 대한 연구전담요원자격 확대	미래부	'13.11월
2-1-3.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특허청	'13.12월
2-1-4. 인증 Fast Track 활용	산업부	'13.12월
2-1-5. 선제적 인증기준 마련	산업부	'14년
2-1-6. 복수인증 간소화	산업부	'14년
2-1-7. 인증경비의 정부R&D 간접비 인정	미래부	'13.9월
2-1-8. 융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13.12월
2-1-9. 산업 융합 선도기업 지정	산업부	'13.10월
2-1-10. 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	산업부	'14.3월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2.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2-2-1.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운영	산업부	'13.12월
2-2-2. 정책융합성 평가 실시	산업부	'13.12월
3. 입지규제 개선		
3-1.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3-1-1.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국토부	'14.2월
3-1-2.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지원	국토부	'14.3월
3-2. 시설간 융·복합 활성화		
3-2-1.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국토부	'14년
3-3-2. 유통업무시설에 금융시설 등 융복합 입지 지원	국토부	'13.8월
3-3-3. 복합용도 건축물 활성화	국토부	'14.3월
3-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3-3-1. 신도시 등 준공 후 계획변경 기간제한 단축	국토부	'13.10월
3-3-2.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국토부	'14.2월
3-3-3.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	국토부	'13.8월
3-3-4.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활성화	국토부	'14년
3-3-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	국토부	'13.8월
3-3-6. 적정 기부채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13.12월
3-3-7.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규제 완화	산업부	'13.12월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3-4.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3-4-1.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림청	'13.10월
3-4-2.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부분준공 허용 확대	산림청	'13.12월
3-4-3. 노천채광 허용 확대	산림청	'13.12월
3-4-4. 채광 허용지역 확대	산림청	'13.10월
3-4-5.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임	산림청	'13.12월
3-4-6.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산림청	'13.12월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4-1. 용도변경 허용 등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4-1-1. 종전부동산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토부 지자체	'14.12월
4-1-2. 종전부동산 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	국토부 지자체 매입기관	'15.12월
4-1-3. 매각조건 조정 허용	기재부	'13.9월
4-1-4. 다양한 매각방식 허용	국토부	'13.9월
4-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4-2-1.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국토부	'14.6월
4-2-2.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	교육부	'15.3월

참고 5 제3호 안건(제1차 무투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이 자료는 2013년 7월 11일(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1.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 추진 현황
2.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2013. 7.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대책 개요 …… 1

Ⅱ.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 추진 상황 ·· 2

1. 추진 개요

2. 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Ⅲ.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 5

1. 추진 개요

2. 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Ⅰ.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대책 개요

◈ 지난 5.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2개의 대책** 발표

1.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 : 총 23건 과제

* 35개 과제를 **23개로 통합하여 관리**(**토론시 제기된 6개 과제 포함**)

□ 대외여건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지원에 중점**

① 수출 중소 중견기업(7.6조원), 해외건설 플랜트(1조원), 조선기자재 선박(2.5조원) 등 **총 11.1조원의 무역금융 확대 지원**

②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인력 확충 등 **FTA 원산지 관리 지원**

③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新보호주의 대응** 등 **시장개척 역량 제고**

④ **수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11건)를 제거**

2. 규제개선 중심의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 총 38건 과제

□ **내수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중점

① **현장에서 대기중인 6건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② **업종별 진입규제** 및 **제도 개선**

③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 (설비투자펀드 3조원→5조원 확대 등)

⇨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발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Ⅱ.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 추진 상황

1. 추진 개요

□ 매월 **수출투자지원협의회**(산업부장관 주재, 5.23일, 6.19일)를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총 23개** 추진과제중 **7건 완료, 16건은 정상 추진중**

2. 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1) 완 료 : 7건

□ **(무역금융 확대) 총 11.1조원의 무역금융 재원 조성**(3개 과제)

○ 시중은행 특별출연(5.20일), 추경(6.12일) 등을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7.6조원), 건설·플랜트(1조원), 선박(2.5조원)** 무역금융 확충

○ 확충재원 중 **3.1조원은 기업에 지원 완료***('13.5.1일~7.4일)

* (수출 중소·중견기업) 3.0조원, (중소형 플랜트) 0.08조원, (선박금융) 0.03조원

□ **(FTA 콜센터 1380)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는 전담 전화상담 창구인 **"FTA 콜센터 1380" 개통**(6.24일)

○ 수출 중소기업(7만여개)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개통 초기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콜센터 인지도 상승**중**(7.9일 현재 20.5%)**

* 문자메시지 225,824명, 간행물 100,237부, 뉴스레터 1,573,405명 등(7.8일)

※ 콜센터 **개통(6.24일) 후** 12일간 **총상담수는 623건**(일평균 52.0건)으로 개통 전 동기 대비 **166.2%(389건↑) 증가**

□ **(전략물자 품목에서 단순 네트워크장비 제외)** 안보위협이 경미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허가 간소화**(사전허가 → 사후신고)를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5.31일)

* 국제 수출 통제체제 품목검토 회의에 상정하여 전략물자품목 대상에서 제외 추진(산업부, 12월)

□ **(온라인 B2C 수출확대 지원)** 상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 제작 관련 **지원대상 선정 완료**(5.31일)

* **(영문)** ('12) 1,208개사 → ('13) 1,300개사 / **(현지어)** ('12) 200개사 → ('13) 800개사
** **(전자카달로그 및 동영상)** ('12) 427개사 → ('13) 517개사

□ **(농식품 엔저 대응방안 마련)** 엔저로 대일 수출실적인 하락한 **화훼류**에 대한 **물류비 및 운영자금** 지원(6월중 100억원 旣 지원)

* 러시아 공동 물류센터 확충도 추진중(현재 물류센터 섭외중)

(2) 정상 추진중 : 16건

□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활성화를 위한 **표준 전자문서 제정**(6.13일)·유통망 구축 및 **연계시스템* 개발·보급**(관세청·중기청, 6.30일)

*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와 FTA-PASS연계 사업 122개사 선정

○ 수요조사를 통해 **무료원산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업종별 특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보급**('14년 상반기)

□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대상 **실무교육***, **FTA 석사** 과정(140명), **퇴직인력 전문컨설턴트** 과정(120명) 등도 실시중('13년)

* 재직자 교육 : ('12년) 41,892명 → ('13년 목표) 45,380명

□ **(원산지관리 단계별 애로해소)**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발급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3자 확인제* 등 개편방안** 검토중(산업부)

* 확인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원청기업의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 **(내수·수출초보기업 지원) 수출 초보기업 500개사**를 선정하여 1:1 **밀착지원**(6월)하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방안」** 수립(7월)

□ **(현장중심 애로해소 시스템 운영)** KOTRA·재외공관·지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수출기업 지원기능**을 강화(12월)

□ **(신보호주의 대응)** 지재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뉴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신설**(5월) 및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

* 보험지원 기업수 : ('12) 29개사 → ('13.6) 35개사 ('13년말 목표: 55개)

○ **수출국의 시험·인증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마련('14.4월)

□ **(G2G 지원기반 구축)** KOTRA의 G2G **계약지원 범위 확대(방산 →방산+非방산물자)**와 **계약이행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14년 하반기)

□ **(전자무역 이용관련 애로해소)** KTNET을 통한 **화물통관정보 제공을 재개**(5월)하고, **전자무역시스템간* 상호 연계 추진**(12월)

* KTNET(산업부), KCNET(관세청), KLNET(해수부) 등

□ **(도로명주소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시스템 개선계획 마련**(6월)을 통한 **영문서비스 오픈 추진**(9월)

□ **(간이정액환급제도* 한도 확대 건의 검토)** 수출기업 지원 효과도 있으나 **과다환급 등**의 문제도 예상

* 수출기업이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해도, 관세환급 규모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 환급률에 따라 관세를 자동 환급

○ **연구용역**(관세청) 등을 통해 **추진여부·규모 등을 추가 검토**중(~12월) (토론시 제기된 과제)

Ⅲ.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1. 추진 개요

□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2주단위로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민관합동 투자 T/F** 등을 통해 **집중 점검·보완중**

※ 경제관계장관회의(5.8일, 6.12일), 민관합동 T/F(5.9일, 6.7일)를 통해 1단계 대책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총 13차례의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총 38개 추진과제**중 **완료 4건, 정상추진 33건, 지연 1건**

2. 과제별 세부 추진상황

현장대기 프로젝트 : 5건 정상추진, 1건 지연

(1) 지 연 : 1건

① **지주회사 규제 개선 (기대 투자효과 : 약 2조원)**

□ **(추진방안)** 지주회사가 **기술도입·신시장개척**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합작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완화**(100%→50%)

* 3개 기업이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추가 투자 예상

□ **(추진상황) 외투법 개정안을 발의**(여상규의원(새), 5.23일)하였으나, **반대의견*** **제기 등으로**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중**(6.19일)

*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 반대의견 제기

□ **(향후계획)** 공정위 사전협의 등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외투법 개정을 재추진**(12월)

(2) 정상 추진중 : 5건

①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 (기대 투자효과 : 1단계(~16년) 약3조원, 2단계(17년~) 약5조원)**

□ **(추진방안)** 가용 용지가 소진된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를 활용**토록 지원

○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시설은 **지하화하여 관리비용 절감**

□ **(추진상황)** 산업부 주관, 공공기관·기업간 **추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 합의**(5.24일)

○ **저장시설 지하화**를 위한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 **진행중**(6월~9월)

□ **(향후계획)** 환경영향평가(10월), **입찰공고**(12월) 후 **공사착공 추진**('14.2월)

② **산업단지내 토지임대차 개선 (기대 투자효과 : 약1조원)**

□ **(추진방안)** 현행법은 산단내에서 **부지와 공장을 분리하여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투법인의 경우 부지만 임대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 **(추진상황) 기존 부지 소유자**(국내기업)**의 입장이 변경**(부지임대 요구 → 합작법인에 부지 출자*)되어 관련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내**에서 해결방안 마련

* 국내기업 소유 부지를 합작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부지소유 주체를 합작법인으로 변경 **(관련사간 추진방식 협의완료(5월))**
→ 이 경우 부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개정 불요**

□ **(향후계획)** 이사회 승인(7월), 현물출자(8월), 부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10월)을 거쳐 **공사착공 추진**(12월)

③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 (기대 투자효과 : 약1조원)**

□ **(추진방안) 열병합발전소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산단내 열병합발전소에 **LNG이외의 연료도 허용**

□ **(추진상황)** 산집법 **시행령 개정,** 산업단지내 열병합 발전소에 **LNG 이외의 연료 허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5.23일)

○ **환경영향평가 착수**(6월), **산업집적법 시행령 입법예고**(7.10일~)

□ **(향후계획)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정**(7.12일)**, 환경영향평가 완료**(8월) 이후, **열병합 발전소 착공**(11월)

④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 **(추진방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가칭: 메디텔)도 호텔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하는 법령상 **근거 마련**

□ **(추진상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5.13일), **입법예고**(6월)

○ **K병원***은 **동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메디텔 설립 추진중**

* 지구단위 계획변경,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14년중 착공예정

□ **(향후계획)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8월)하고, 메디텔의 **세부 인·허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9월)

⑤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 **(추진방안) 육상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사업이 **기 진행중인 14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가능여부** 사전 검토

□ **(추진상황)** 14개 단지 **입지적정성 검토 완료**(5.24일, 7.8일, 환경부·산림청), 풍속 등을 기초로 한 **풍력자원지도 제작 완료**(5.31일, 산업부)

○ 사전 검토 결과, **14개 단지**중 **4개 단지가 입지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2개 단지는 5.24일, 추가 2개 단지는 7.8일)

- **8개 단지**는 산림 훼손, 소음 등 **환경 피해 우려로 부적합** 결정, **2개 단지**는 기업이 **사전검토 신청 중단**(추후 재추진 의사)

○ 5.24일 **적합성 판정**을 받은 2개단지중 **1개 단지는 사업허가 취득** 절차 진행중(7월)이며, 다른 **1개 단지는 사업허가 신청**(8월) 준비중

□ **(향후계획) 풍력단지 구축가능 지역을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2월)

분야별 주요 제도개선 과제 : 완료 4건, 정상추진 28건

(1) 완 료 : 4건

□ **(공장증축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 부담금 50% 감면**(개발제한구역법 개정, 5.28일)으로 **광명 A사 공장 증축 추진** (7월중 착공 예정, 투자비 약 270억원)

□ **(계획관리지역내 규제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50%), **용적률을 완화**(100%→125%)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6.25일)

*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공포(국토부, 6.19일)

□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간접투자 제한 완화**(49%→100%)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7.3일)

○ **지분 소유과정의 공익성 심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5.31일 공포)

(2) 정상 추진중 : 28건

□ **(설비투자펀드 규모 확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 재원 규모 확대를 반영한 **연차별 지원계획 변경·수립**(8월)

□ **(중소기업 설비교체 지원)** 중고설비 교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의 신성장기반자금을 증액**(+3,000억원)하고,

○ 중고설비 매매업체(28개)에 설비·운전자금 **88.3억원 지원**(6월말 기준)

□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

*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

○ 현재 국회 **상임위(교문위) 심사중**이며, **9월까지 개정 완료** 추진

□ **(유수지내 행위제한 완화)** 유수지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지가능 시설이나 건축물을 폭넓게 허용**

○ 유수지 이용현황 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5월), **현장방문**(6월) 등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3일)

* **(현행)** 유수지내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문화·체육시설 등**만 가능
→ **(개선)**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 설치**도 가능

□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확대) 융합행정협의회**(산업부·환경부, 5월), **이해관계자 간담회**(6월) 등을 거쳐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확대** 추진

- **협의완료**된 재제조 대상 제품*은 **고시**(산업부·환경부, '13.7월)하고, **추가 인증이 필요**한 재제조 제품을 **지속 발굴**(~'15년)

* ('12) 10개 제품 고시 → ('13.7월) 9개 제품 추가 고시 예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 U턴기업의 지자체 투자 독려 등 **지자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부 고시* 개정안 마련중**('13.7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여타 22개 과제도 정상 추진중**

◇ 향후에도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빠른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설명 등 **대국회 협의를 강화**

○ **업계 건의사항 추가 수렴** 및 **관련제도 보완** 추진